2006년도

농 림 사 업 시 행 지 침 서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총5권중 제1권

2005. 12.

농 림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5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타,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6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타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fax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해설

Ⅰ.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 1

1. 배경 ····· 2

2. 2006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 3

3. 주요변경사항 ····· 7

4. 해설 ····· 8

제1장 총칙 ·····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 11

제3장 전문가위원회 ····· 12

제4장 농림사업 ····· 13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20

제6장 보칙 ····· 22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 24

Ⅲ.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 70

1. 배경 ····· 71

2. 주요골자 ····· 73

3. 주요 변경사항 ····· 77

4. 해설 ····· 82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 101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129

Ⅵ. 기타주요사항 ····· 248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 249

제2권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 254

Ⅰ. 생산기반확충 ····· 255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 256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자율) ····· 319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 329

4. 수리시설개보수(공공) ····· 339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340

② 저수지 준설사업 ····· 350

③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 367

5. 중규모 용수개발(공공) ····· 376

6.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 400

① 지하수 자원관리 ····· 400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 406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 426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 430

7. 농지조성(공공) ····· 435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 435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 453

8. 개인육종 활성화 지원사업(자율) ····· 471

① 해외 품종보호 출원비용 지원 ····· 472

② 신품종 등록품종 개발비 지원 ····· 477

Ⅱ. 농업기계화 ····· 482
9. 농기계구입지원(자율) ····· 483
10. 농기계임대사업(자율) ····· 538
11. 농기계생산지원(공공) ····· 554
12. 농기계보관창고지원(자율) ····· 570
13.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자율) ····· 573
Ⅲ. 생산 및 유통개선 ····· 587
14.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자율) ····· 588
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DSC)지원사업 ····· 588
②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지원사업 ····· 603

『농업(원예)구조개선』 ····· 618

Ⅰ. 생산기반확충 ····· 619
15.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자율) ····· 620
16. 과수원정비지원사업(자율) ····· 657

Ⅱ.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 685
17.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율) ····· 686
①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 686
②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 698
18.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자율) ····· 753
19. 인삼계열화사업(자율) ····· 799
20.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지원(자율) ····· 806
21.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지원(공공) ····· 818
22.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 827

23.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 832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 832
② 축산물자조금조성 ····· 843
24.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 853
①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 853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 860
25.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 867
26.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 871
27. 우수농산물지원(공공) ····· 892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 892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 899
28.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공공) ····· 922

Ⅲ.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 947

29.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자율) ····· 948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995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 1037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 1066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1078
⑤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1111
30.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공공) ····· 1129
31.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 1150
32.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 1184
33. 과원폐원지원사업(자율) ····· 1203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Ⅰ. 사료사육기반확충 ····· 1227

34. 사료사업지원(자율) ····· 1228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1228

② 사료산업 종합지원 ····· 1266

35.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율) ····· 1275

36. 경주마 육성(공공) ····· 1303

37. 한우사업지원(공공) ····· 1310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1310

② 품질고급화 장려금 ····· 1321

38. 가축개량사업(공공) ····· 1335

39.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자율) ····· 1387

40. 양봉산업육성(자율) ····· 1398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 1413

41.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 1414

①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 1414

② 축산물 등급판정 ····· 1437

③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 1442

42.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공공) ····· 1449

①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1449

② 가축계열화 ····· 1487

③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 체인점 지원 ····· 1499

④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 ····· 1506

43.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 1521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 1521
② 축산물검사 ····· 1528
③ HACCP 컨설팅지원 ····· 1539
④ 가축방역 ····· 1545
⑤ 가축공제 ····· 1567
44.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 1572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 1583

Ⅰ. 생산 및 유통개선 ····· 1584
45. 친환경농업육성(자율) ····· 1585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1585
②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 1620
46.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 1637

Ⅱ. 기술개발 및 정보화 ····· 1678
47.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 1679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1679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 1686
③ 농업정보서비스 사업 ····· 1695
④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1702
48. 농림기술개발(공공) ····· 1715
49. 기술보급(공공) ····· 1724
① 새기술보급시범 ····· 1724
② 농업인전문교육 ····· 1731

Ⅲ. 인력육성 ····· 1736
50.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율) ····· 1737
① 창업농지원사업 ····· 1737
② 농업인턴제 ····· 1774
③ 창업농후견인제 ····· 1804
51. 농업인자녀지원(공공) ····· 1832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832
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1845
52.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 1849
53.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공공) ····· 1879
Ⅳ. 소득보전 ····· 1913
54. 농업직접지불제(공공) ····· 1914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 1914
② 친환경직접지불 ····· 1951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 1967
④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2013
⑤ 친환경축산직불 ····· 2049
55. 농업인재해공제(공공) ····· 2092
56.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공공) ····· 2099
57. 취약농가 인력지원(자율) ····· 2112
Ⅴ. 소득원개발 ····· 2133
58.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2134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2134
② 관광농원 ····· 2153
③ 농어촌민박사업 ····· 2174

59.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 2186
60.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 2217
①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 2217
② 농업인경영회생지원 ····· 2224

Ⅵ. 생활환경개선 ····· 2235
61. 폐비닐 수거비 지원(자율) ····· 2236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2242

Ⅰ. 경영기반 확충 ····· 2243
62.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자율) ····· 2244
63. 영림계획(자율) ····· 2247
64. 사방사업(공공) ····· 2252
65.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공공) ····· 2257

Ⅱ. 생산 및 유통개선 ····· 2260
66. 임산소득증대(자율) ····· 2261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2261
② 조경수·분재생산 ····· 2274
③ 산림복합경영 ····· 2281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 2287
67. 산림조합육성(공공) ····· 2295
68. 임산물유통개선 지원(공공) ····· 2298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2298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 2336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2342
69.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자율) ····· 2348

Ⅲ. 인 력 육 성 ····· 2386
70.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 2387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 2387
② 임업기술지도 ····· 2393
③ 사유림협업경영 ····· 2397

Ⅳ. 산림자원조성 ····· 2401
71. 해외조림투자지원(자율) ····· 2402
72.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 2408
73.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공공) ····· 2420
74. 식물자원 보전관리(공공) ····· 2427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 밭기반정비(공공) ····· 2431
76. 농지기반조성(공공) ····· 2460
① 경지정리사업 ····· 2460
②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2493
77. 배수개선(공공) ····· 2510
78. 방조제개보수(공공) ····· 2535
79. 농촌용수개발(공공) ····· 2552
① 한발대비용수개발 ····· 2552
② 소규모용수개발 ····· 2559
③ 지표수보강개발 ····· 2582
80.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공공) ····· 2601
81. 지역특화사업(공공) ····· 2614
82. 씨감자 생산기반조성(공공) ····· 2629

83.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 2633
84.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자율) ····· 2644
85. 농산물소비지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 ····· 2688
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 ····· 2688
② 소비자밀착형직판장지원 ····· 2701
86.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 2711
87.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 2717
88.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공공) ····· 2725
89. 농어촌생활환경정비(공공) ····· 2742
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 2742
② 전원마을조성사업 ····· 2767
90.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 2826
91. 농공단지육성(공공) ····· 2854
92. 묘목생산기반조성(공공) ····· 2872
93. 산촌개발(공공) ····· 2878
94. 목재이용 가공지원(공공) ····· 2888
①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 2888
②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 2895
95. 자연휴양림 조성(공공) ····· 2898
96. 도시숲조성관리(공공) ····· 2905
97.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공공) ····· 2911
98. 생태숲조성(공공) ····· 2917
99. 임도시설(공공) ····· 2922
100. 야생화타운 조성(공공) ····· 2927
101.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공공) ····· 2930

Ⅰ.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에『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추가,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2006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 농림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119조 투융자심사평가시스템 혁신 방안 반영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내기관은 농업인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등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등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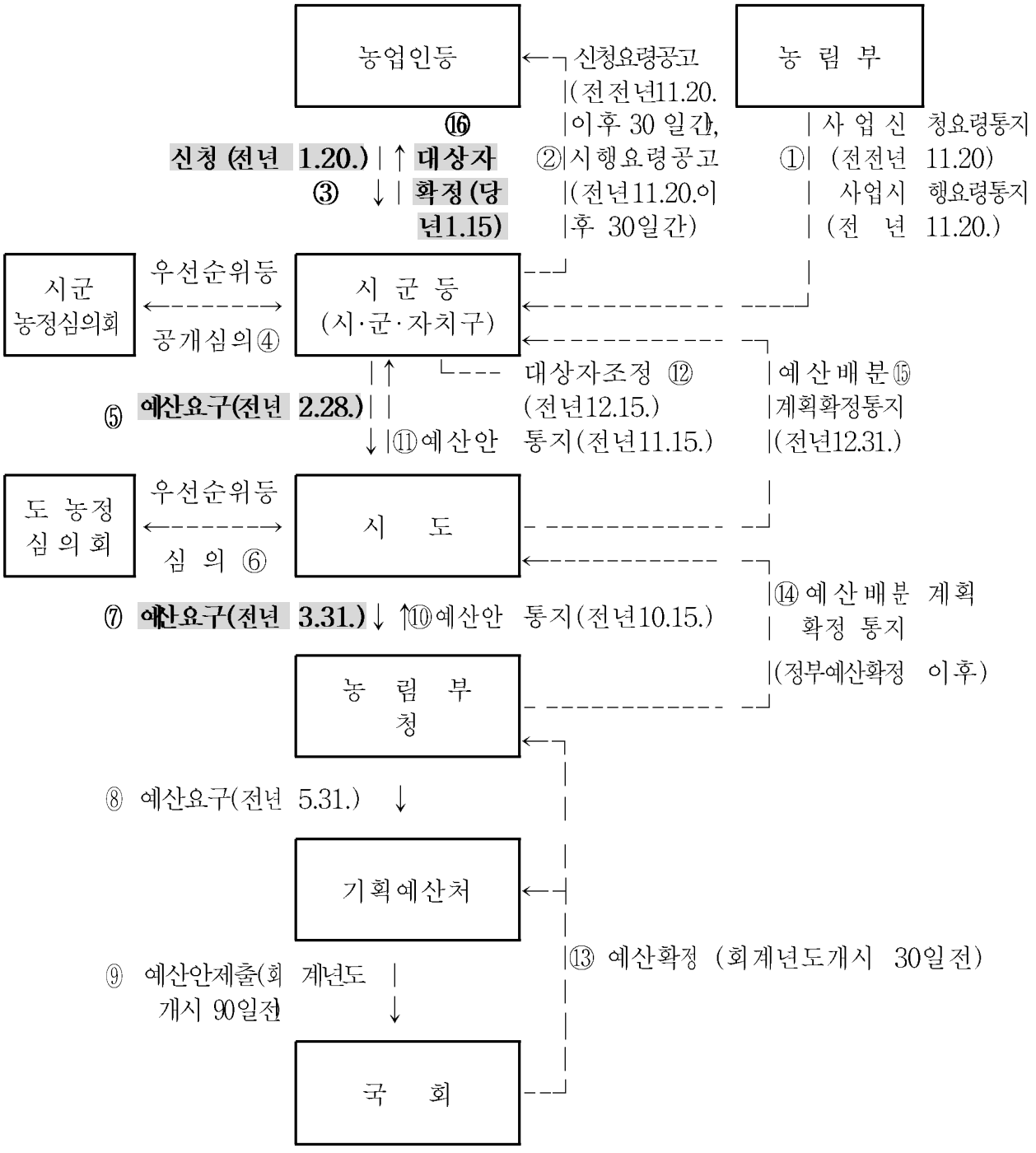

3. 주요 변경사항

□ **온라인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18조제2호)**

○ 농업인등이 홈페이지에 있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가능한 사업을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정심의회 구성원의 비밀준수의무 부과(제25조제6항)**

○ 농정심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회의 참석자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 농정의 투명성과 함께 선의의 피해 예방

□ **농림사업의 결산 기한 명확화(제34의 2조)**

○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의 결산을 하여 **10일 이내에** 농림부 및 청의 사업담당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

□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시 사업시행자의 의견 수렴(제36조제2호)**

○ 신규사업선정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 **신규사업 홍보 강화(제42조)**

○ 신규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채택 즉시 홍보를 하고 이후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함

□ **농업법인 지원요건 현실화(제46조 관련)**

○ **한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조항 본문의 적용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별표 1-카)

4. 해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부 : **재정평가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

(6) **사업시행기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부, 청, 시도 또는 시군등,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축협, 농업기반공사 등(제2조제6호)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4조제2항)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5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4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3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하고, 균특회계 사업은 제5권으로 편제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 제4권 : 농촌개발·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타, 생산자단체 등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농림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4조제6항)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제1항)

(2) 기능(제5조제2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의 골자와 관련된 사항 개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1) 구성(20인이내)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투융자평가통계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농림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8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5조제2항 각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과 농림부 및 청의 기획예산담당관

제3장 전문가위원회

가.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1)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신규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장) 및 부위원장(각 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장 농림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16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16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에서 홈페이지나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제16조제2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17조)

○ 안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농림사업의 신청절차(제18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18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8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3) 신청기한(제19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0조 내지 제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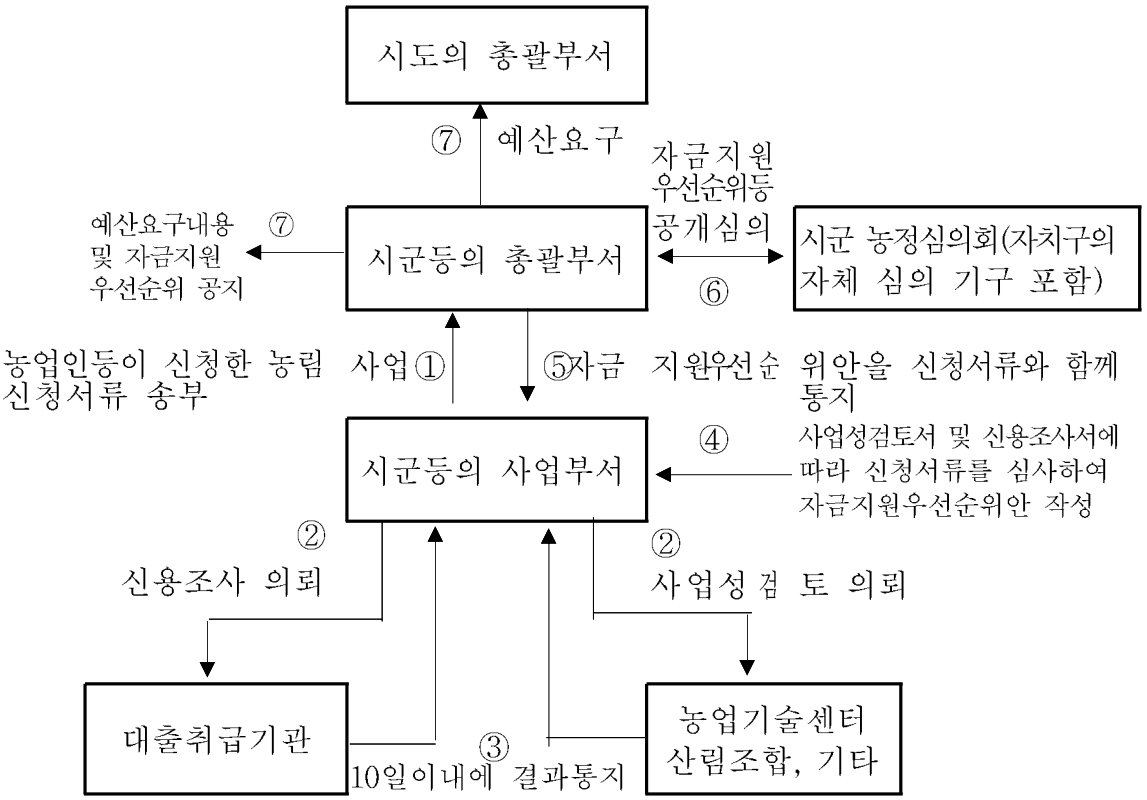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축·인삼업 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③ 신용조사(제20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0조제4항)

④ 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제23조)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24조제2항)
- 농림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24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24조제3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25조)

○ 시군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

○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제2항)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갈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25조제4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26조)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 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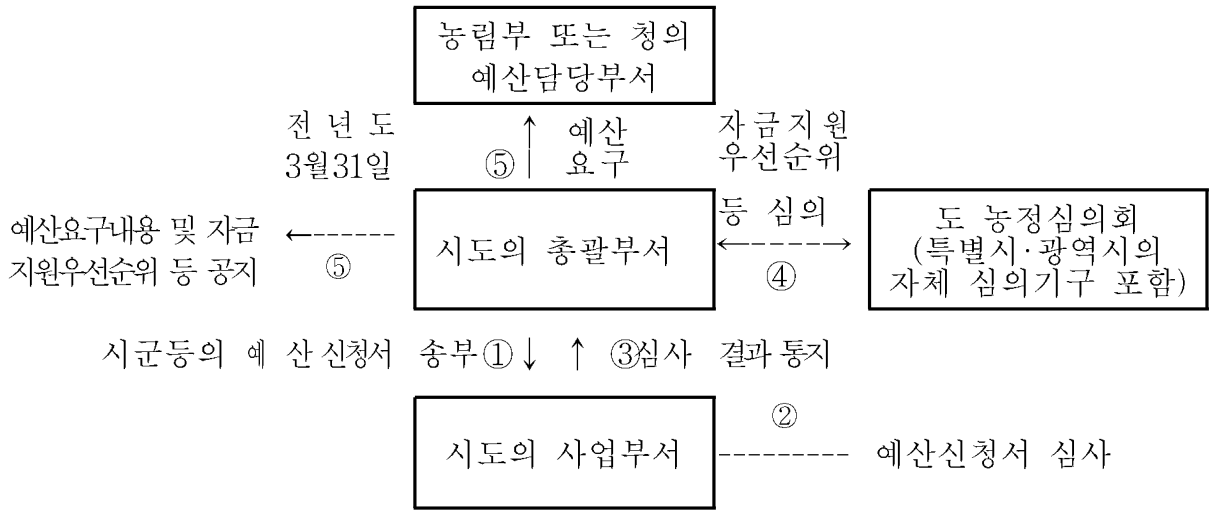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28조)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28조제1항)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29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29조제1항)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9조제2항)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2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30조 내지 제33조)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30조)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1조)

(3) 시군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32조, 제33조)

<자금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변경시 순서>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34조)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제3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2) 시장군수등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3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의 저촉 여부
-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5조제3항)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35조제4항)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함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6조)

(1)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외부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6조제1항)

(2)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36조제2항)

(3)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

(4)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6조제4항)

다. 신규사업의 채택(제37조)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37조제3항)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제38조)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제39조)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41조)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42조)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채택을 확정즉시 사업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 사업신청서 제출(제18조)
-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0조 내지 제22조)
-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23조 내지 24조)
- ○ 시군 농정심의회의 공개심의(제25조)

제6장 보칙

-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44조제1항)
-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 (제44조제2항)

-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44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44조제4항 별표2)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제44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협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44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산림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5조)**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Ⅱ. 농림사업실시규정
(훈령 제1219호)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 농·축산업협동조합, 농업기반공사 등 농림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 12. >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4조(농림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에 대하여 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제5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12. >
2.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농림부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투·융자평가통계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재정기획관
2. 농림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05. 12.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재정기획관과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의 투·융자평가통계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과 농림부 및 청의 재정기획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3 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장 농림사업

제16조 (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 >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축·인삼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

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규정 삭제)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정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 등의 농정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도의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정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 신설 2005. 12. >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4의 2조 (농림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담당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 >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5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전임자문관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39조(시범사업 실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농업·농촌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 >

제43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4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12.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1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 림 사 업 분 류 표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101)		(36)	(65)
제2권 식량작물,원예(33)		(17)	(16)
【식량작물】		(8)	(6)
	가.생산기반확충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
			수리시설개보수
			중규모 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지조성
		개인육종활성화	
	나.농업기계화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다.생산및유통개선	미곡종합처리장시설 ·운영	
【원예】		(9)	(10)
	가. 생산기반확충	마늘경쟁력제고지원	
		과수원정비지원	
	나.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농산물물류표준화	
		산지유통활성화	
		인삼계열화	
		농산물가공원료 수매자금	
			농산물 출하촉진 자금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농산물 직거래지원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
			채소수급안정
			농산물판매촉진
			농수산물해외시장개척
			우수농산물지원
			농산물유통전문교육
	다. FTA 기금 과수지원	지방자율계획(과실생산, 유통지원)	
			과수 우량묘목 생산
		과원영농규모화	
			과수산업소득보전직불
		과원폐원지원	
제3권. 축 산		(4)	(7)
	가. 사육기반확충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경주마육성
			한우사업지원
			가축개량사업
		친환경축사설치시범사업	
		양봉산업육성	
	나. 축산물생산 · 유통		축산물유통개선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축산물안전성검사
			학교우유급식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14)	(16)
【농촌개발】		(9)	(8)
	가. 생산 및 유통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나.기술개발・정보화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농림기술개발
			기술보급
	다. 인력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자녀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체험마을사무장채용
	라. 소득보전		농업인 직접지불제
			농업인 재해공제
			농어업인건강보험료경감
		취약농가 인력지원	
	마. 소득원 개발	농촌관광 휴양단지 개발	
		한계농지 정비	
		농가경영안정지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5)	(8)
	가.경영기반확충		
		임업기계지원센터설치	
		영림계획	
			사방사업
			산불진화진입도로개설
	나.생산 및 유통개선	임산소득증대	
			산림조합육성
			임산물유통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다. 인력육성		임업전문인력 ・기술지도
	라. 산림자원 조성	해외조림투자지원	
			조림・숲・묘목
			산림・산촌클러스터
			식물자원 보전관리

대 분 류	중 분 류	단 위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제5권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1)	(26)
			밭기반정비
			농지기반조성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지역특화사업
			씨감자생산기반조성
			농산물물류표준화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소비지유통기반확충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생활용수개발
			농공단지육성
			묘목생산기반조성
			산촌개발
			목재이용가공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숲 성관리
			임도시설
			야생화타운 조성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별표2 : 제44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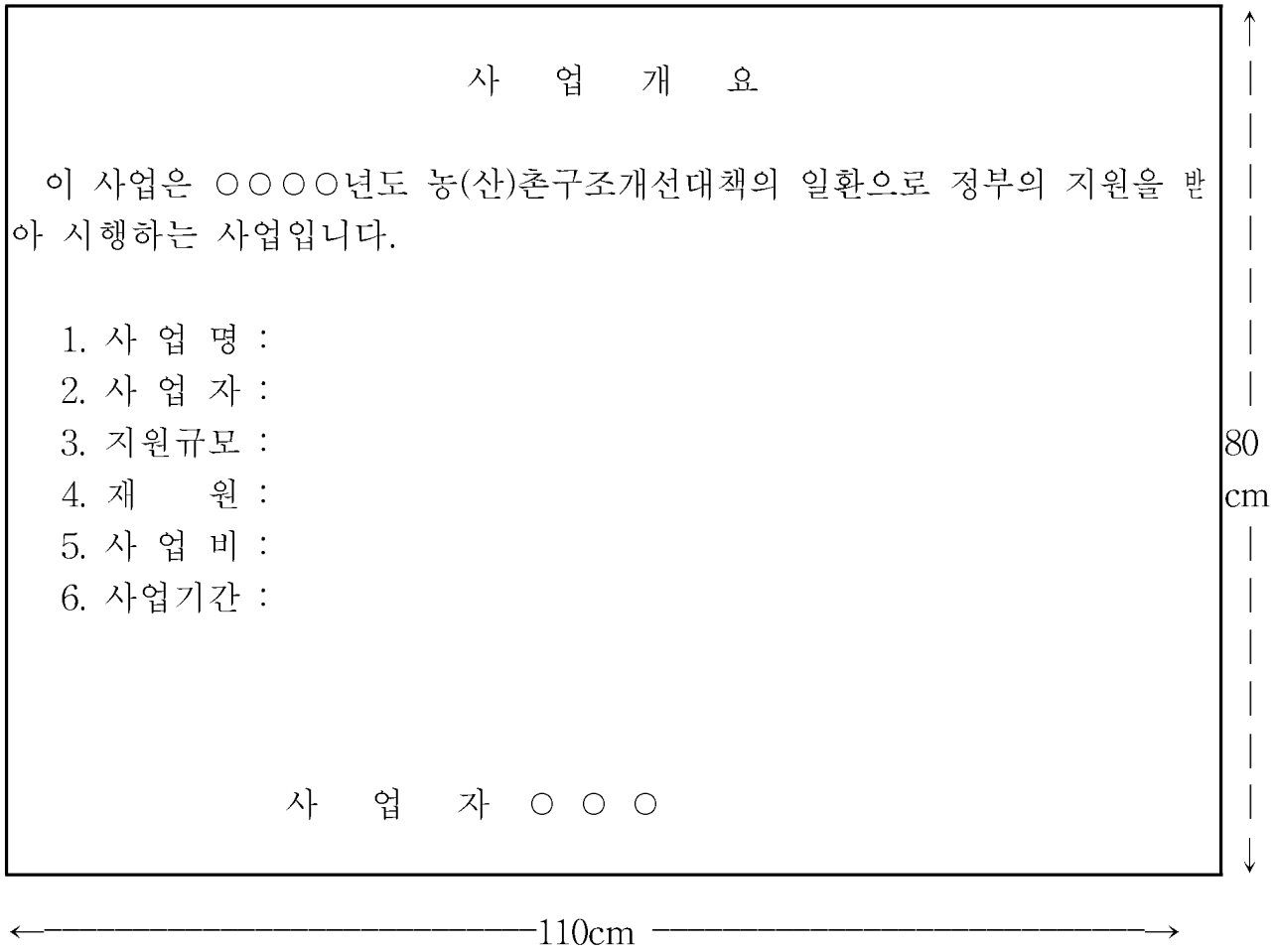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6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개정 2004. 11.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개정 2005. 12. >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법인은 예외로 한다.

-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위해 농업법인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본 조항 본문의 적용배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업의 대상자로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법인<개정 2005. 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o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o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차. <삭제 2005. 12.>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6"></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영농(림)
종사경력</td><td>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4">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등의 형태</td><td colspan="2">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td><td>참여농가수</td><td colspan="3">호</td></tr>
<tr><td rowspan="5">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6"></td></tr>
<tr><td>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3">농지이용계획</td></tr>
<tr><td colspan="2">농업진흥지역안</td><td>지구</td></tr>
<tr><td colspan="2">농업진흥지역밖</td><td>지구</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table>
<tr><td rowspan="4">영 농
규 모
(ha)</td><td></td><td>논</td><td>밭</td><td>과수원</td><td>사료포</td><td>목초지</td><td></td><td>계</td></tr>
<tr><td>소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임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재 배
현 황
(ha)</td><td>벼</td><td>사과</td><td>배</td><td>포도</td><td></td><td></td><td></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시 설
현 황</td><td rowspan="4">개별
시설</td><td colspan="2">관수시설</td><td colspan="2">저온저장고</td><td colspan="2">일반저장고</td><td>선과기</td><td>기 타</td></tr>
<tr><td colspan="2">관 정 : ha</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대</td><td></td></tr>
<tr><td colspan="2">점적관수 :</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스프링쿨러 :</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톤)</td><td></td></tr>
<tr><td rowspan="2">공동
시설</td><td>저온저장고</td><td>선과장</td><td>인공수분기</td><td>수송차량</td><td>교육장</td><td>기 타</td></tr>
<tr><td>㎡</td><td>개소
(톤)</td><td>식</td><td>대
(톤)</td><td>㎡</td><td></td></tr>
<tr><td colspan="9">(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td></tr>
<tr><td>기 타
사 항</td><td colspan="9"></td></tr>
</table>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자단체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7"></td></tr>
<tr><td>사업
규모</td><td></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재원명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td><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able>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table>
<tr><td>생산자단체등의 명 칭</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 화</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td><td colspan="5">사 업 비 (천원)</td></tr>
<tr><td>사업규모</td><td></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td><td>계</td><td>보조</td><td>대출</td></tr>
</table>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275-007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등 록 번 호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동산 보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해설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융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 '99. 11. 8 주요개정사항 >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 '02. 11. 20 주요개정사항 >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 '03. 11. 10 주요개정사항 >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 '05. 12. 22 주요개정사항 >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시 사업자등록증소자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명확히 함
-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의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작성한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협동조합과장)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 과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중 하나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업 검정 실시

라.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삼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융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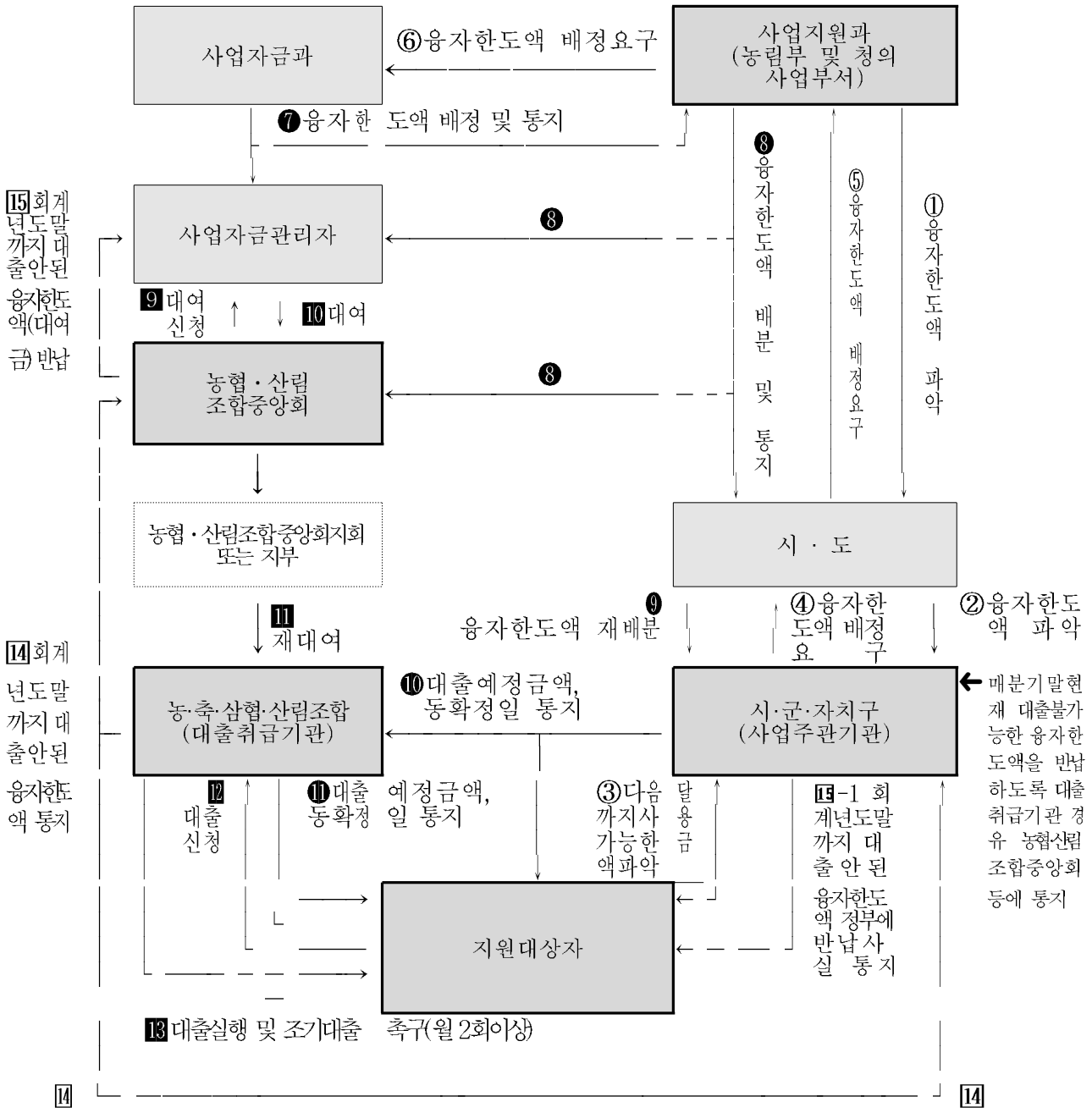

(주) ○ 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삼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융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 ❽은 훈령의 제1호서식, ❾는 제2호서식, ❿은 제3호서식, 14는 제5호서식, 15-1은 제6호서식에 의함

○ ❽의 통지가 없으면 ❾의 대여신청과 ❿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①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자금지원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좌와 같음)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제4조제6항) - 자가노무비(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사업자등록증소지자는 은행통장 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증빙자료로 명확화(제4조제5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제4조제6항)
②완료사업의 검정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제4조제7항)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4항)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제외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제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 ~'02.11.19	'02.11.20 ~'03.11.1	'03.11.11 ~'05.12.31	'06.1.1이후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④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 대여시기	○융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관리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 ~'05.12.31	'06.1.1이후
⑦ 융자금 예산의 이월사용	○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 당해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 (제10조제1항)('98.12.19 개정)	(좌와 같음)	○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 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 (제10조제1항) ○ 사업지원과는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가능 (제10조제2항) ○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⑧ 대출기한도래전에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 반납이자(제8조6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 ~'02.11.19	'02.11.20 ~'03.11.10	'03.11.11 ~'05.12.31	'06.1.1이후
⑨ 대출기한	○당해 회계년도 말 (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 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제10조제1항('98.12.19 개정)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적용 (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 제2호)	(좌와 같음)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 (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⑪ 여신관리계좌 운용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받아야함(제12조제1항)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 ~'02.11.19	'02.11.20 ~'03.11.10	'03.11.11 ~'05.12.31	'06.1.1이후
⑫ 여신관리계좌 입금액 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여신관리계좌 마감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⑭지원실적의 공개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축임 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사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예] 농특회계(융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융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협동조합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안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율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안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융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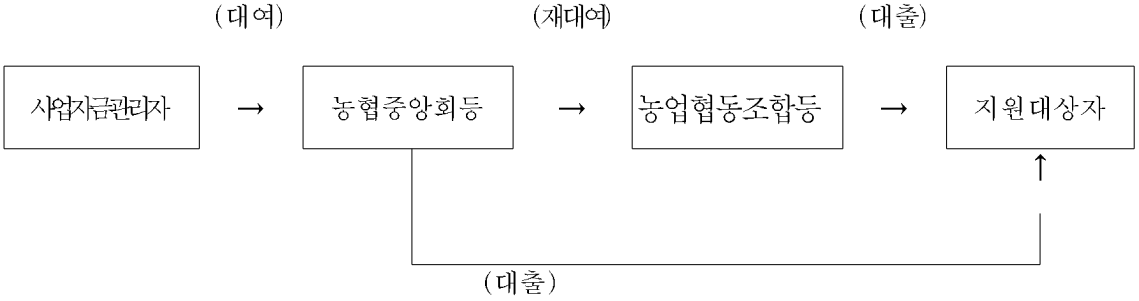

(3)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4)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융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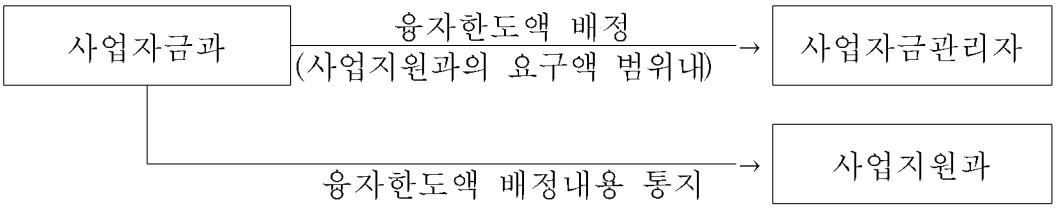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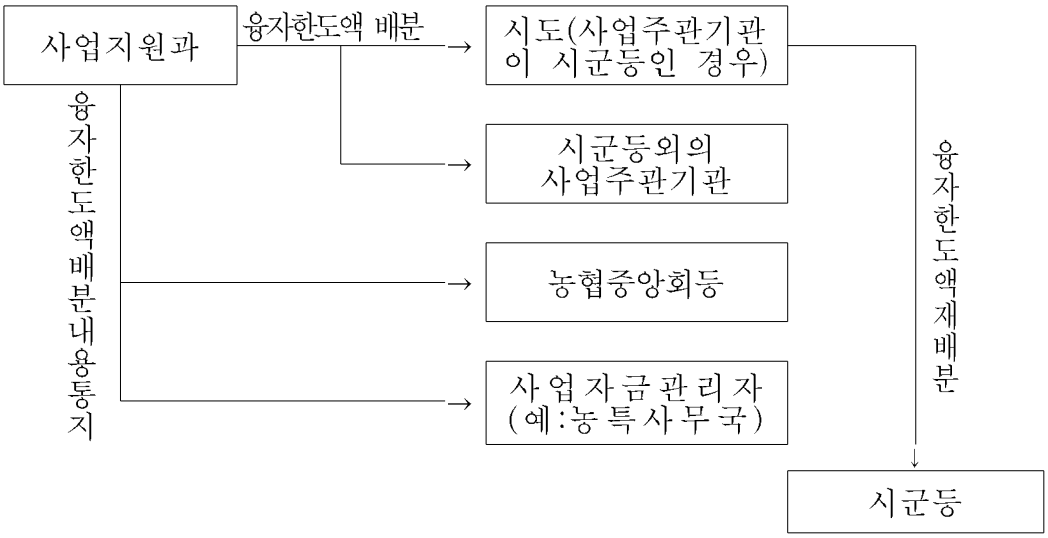

- 시도는 시군등에 융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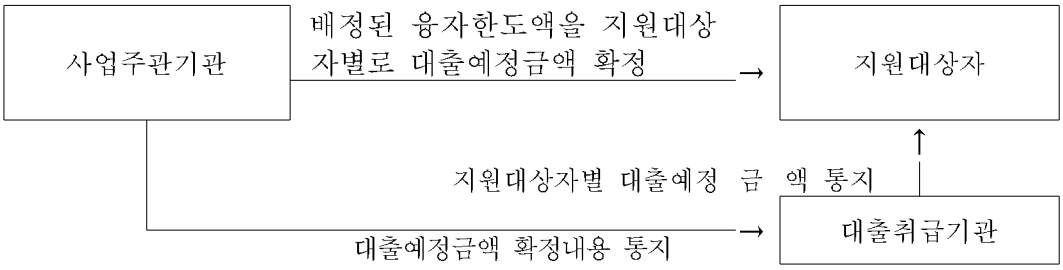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 (제10조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3)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

으나, 획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 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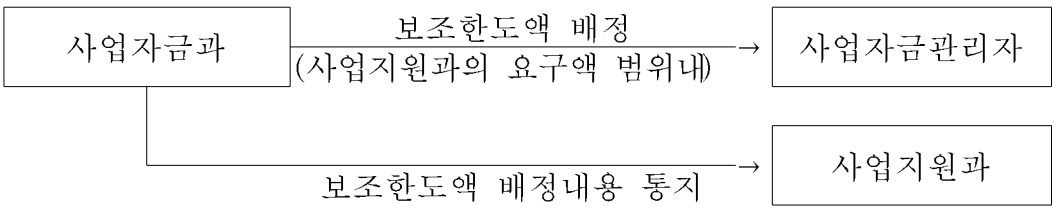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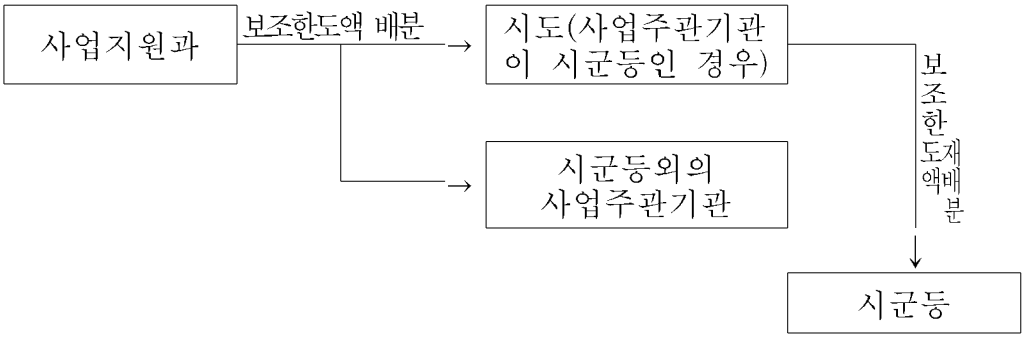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파. 보칙(제18조)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Ⅳ.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1221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제정]

개정 1996. 8. 8. 훈령 제 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 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21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10.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98.7.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 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엿음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7.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1.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10.19, 1997.10.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7조 (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0.11.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개정 1999.11.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10.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7.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10.29>

제10조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11.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8.8, 1997.10.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1997.10.29, 1998.3.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7.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7.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7.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7.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7.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7.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7.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7.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7.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7.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7.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제17조 <삭제 1997.10.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8.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1.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8.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8.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8.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 11.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 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9.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1. 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이 훈령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지원과

접수 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부(또는청)○○과	○○○○	○○○
	피확 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시·도) ○○과	. . . .	. . . .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이번 배정 : ("3"의 배정일분)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합계 :	㉛ 천원

(주) ○ ①=②+③+④, ③=㉛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발신 : ○○시도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시·군·자치구 ○○과	· · · ·	· · · ·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㉛

합계 : ㉛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정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합계 : ㉛ 천원

(주) ○ ①=②+③+④, ③=㉛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확인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사업명	주 소 /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 융자 한도액 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조합 ○○부서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연간예산액	① 천원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이번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정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⑤1

합계 : ⑤1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 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table>
<tr><th>구 분</th><th>현 행(2005)</th><th>변경안(2006)</th><th>변경사유</th></tr>
<tr><td>제2권 농업(식량작물, 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 규조개선』
Ⅰ. 생산기반확충
1. 영농규모화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td><td>(단위 : ha, 백만원)
<table><tr><td>구분</td><td>'95~'03</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 이후</td></tr><tr><td>사업량</td><td>77,515</td><td>7,688</td><td>11,305</td><td>14,403</td><td>79,193</td></tr><tr><td rowspan="2">사업비</td><td>계</td><td>272,801</td><td>309,212</td><td>476,941</td><td>557,905</td><td>2,688,724</td></tr><tr><td>융자</td><td>272,801</td><td>309,212</td><td>476,941</td><td>557,905</td><td>2,688,724</td></tr></table></td><td>(단위 : ha, 백만원)
<table><tr><td>구분</td><td>'95~'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 이후</td></tr><tr><td>사업량</td><td>85,643</td><td>11,305</td><td>12,094</td><td>15,572</td><td>77,141</td></tr><tr><td rowspan="2">사업비</td><td>계</td><td>302,2013</td><td>476,941</td><td>466,346</td><td>517,388</td><td>2,206,452</td></tr><tr><td>융자</td><td>302,2013</td><td>476,941</td><td>466,346</td><td>517,388</td><td>2,206,452</td></tr></table></td><td>○'06년 예산반영</td></tr>
<tr><td>5. 나.지원대상자</td><td><table><tr><td>구 분</td><td>지 원 대 상</td></tr><tr><td>농지매매</td><td>※ 농과계학교 졸업자, 경종 분야 후계농업인</td></tr><tr><td>농지장기 임 대 차</td><td>※ 농과계학교 졸업자, 경종 분야 후계농업인</td></tr></table></td><td><table><tr><td>구 분</td><td>지 원 대 상</td></tr><tr><td>농지매매</td><td>※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 분야 후계 농업경영인</td></tr><tr><td>농지장기 임 대 차</td><td>※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 농업경영인</td></tr></table></td><td>○용어순화 및 정리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td></tr>
<tr><td>마. 지원규모 및 조건</td><td>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표” 중
○농지매매 융자금리 : 연리 3.0%
○농지교환·분합 융자금리: 연리 3.0%
<사업시행요령 > 라. 농지교환·분합사업 중 지원조건(3곳) : 연리 3.0%</td><td>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표” 중
○농지매매 융자금리 : 연리 2.0%
○농지교환·분합 융자금리: 연리 2.0%
<사업시행요령 > 라. 농지교환·분합사업 중 지원조건(3곳) : 연리 2.0%</td><td>○쌀 협상 국회비준 추가 지원 대책 발표에 근거 (10.28)</td></tr>
<tr><td>바. 2006년도 사업비 내용</td><td>바. 2005년도 사업비 내용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사업량</td><td colspan="5">사 업 비</td></tr><tr><td>사업비 합계</td><td>예 산 액 (농지관리기금)
계</td><td>보조</td><td>융자</td><td>지방비</td><td>자부담</td></tr><tr><td>계</td><td>11,305</td><td>476,941</td><td>476,941</td><td></td><td>476,941</td><td>-</td><td>-</td></tr><tr><td>매매</td><td>4,010</td><td>290,335</td><td>290,335</td><td></td><td>290,335</td><td>-</td><td>-</td></tr><tr><td>임대차</td><td>7,445</td><td>183,891</td><td>183,891</td><td></td><td>183,891</td><td>-</td><td>-</td></tr><tr><td>교환분합</td><td>50</td><td>2,725</td><td>2,725</td><td></td><td>2,725</td><td>-</td><td>-</td></tr></table></td><td>바. 2006년도 사업비 내용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사업량</td><td colspan="5">사 업 비</td></tr><tr><td>사업비 합계</td><td>예 산 액 (농지관리기금)
계</td><td>보조</td><td>융자</td><td>지방비</td><td>자부담</td></tr><tr><td>계</td><td>12,094</td><td>466,346</td><td>466,346</td><td>-</td><td>466,346</td><td>-</td><td>-</td></tr><tr><td>매매</td><td>4,160</td><td>265,564</td><td>265,564</td><td>-</td><td>265,564</td><td>-</td><td>-</td></tr><tr><td>임대차</td><td>7,884</td><td>178,057</td><td>178,057</td><td>-</td><td>178,057</td><td>-</td><td>-</td></tr><tr><td>교환분합</td><td>50</td><td>2,725</td><td>2,725</td><td>-</td><td>2,725</td><td>-</td><td>-</td></tr></table></td><td>○'06년도 사업비 확정 내용 반영</td></tr>
</table>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추진체계> 나.사업담당부서	(2) 농업기반공사(영농규모화 사업 시행) (가) 본사: 농지사업처 (031) 420-3357,3348 (나) 각도본부: 농지사업부 (제주도의 경우 총무부) (다) 시·군관할지사 : 총무부, 농지사업부 또는 사업부	2) 농업기반공사(영농규모화 사업 시행) (가) 본사 : 농지은행사업본부 (031) 420-3354,3348 (나) 각도본부 : 농지사업팀 (제주도의 경우 경영지원팀) (다) 시·군관할지사 : 농지사업팀	○담당부서 변경
<사업시행요령> 가.농지매매사업 (1)대상농지 확보	(다) 매입 제외농지 ①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 자금 ---------- 지원한 농지.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 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농지 <신설>	(다) 매입 제외농지 ①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 자금 ---------- 지원한 농지.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8년 전매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매매사업 지원 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간 경작된 농지 ⑥ 논 경영규모 5.0ha이상인 농가의 농지. 다만, 전업 은퇴,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	○투기방지를 위해 1년간 경작기간을 둠 ○5ha이상 규모화된 농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 금지
	(라) 매입가격의 결정 ①매매가격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 지가와 --------(이하생략)	(라) 매입가격의 결정 ①매매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 ---------(이하생략)	○관련법 명칭변경 및 규정개정 ('05.1.14)
(바)소유권 이전등기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경영이양 -------(이하생략)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경영이양 --------(이하생략)	○관련규정 명칭 정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2)(가)지원대상자 230, 237쪽 (224쪽도 해당)	①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 60세 이하(임대차는 만62세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 이상인 자 <신설>	①---------- ---------- ---------- ----------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정책목표에 맞게 공공용지 편입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화
	○후계농업인, 농과계학교 ⑤ ㉮ ----경작하고 있는 법인 명의 소유답 -------- <신설>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학교 ⑤ ㉮ ----경작하고 있는 법인 명의 경영답 --------	○용어 정리 ○조문간 부합정리 (224쪽)
(나)지원 제외자		①허위·담합으로 영농규모화 지원을 받은 자로서 쌀전업농 자격이 취소된 자	○허위담합시 지원 영구제외
	①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기 보유농지를 고의로 매도 —— 축소한 자	②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기 경영농지를 고의로 매도 ----- 축소한 자. 다만,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단서삽입 (종전 면적 자력 확대자 구제)
	③기존 경작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외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작지를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④주 경작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외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공공목적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농지수용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없이 동일 또는 연접한 도에 한하여 1회 지원 가능	○집단화를 위한 타 시·군·구 지역 지원조건 명확화
	⑤신청년도 1월1일기준 최근 3년동안 지원조건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은 자	⑥신청년도 1월1일기준 최근 3년동안 지원조건 위반(허위·담합제외)으로 시정촉구를 받은 자	○허위·담합시 지원 영구제외(1항 신설)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라)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공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쌀 전업농교육을 이수한자 <신설>	①㈃공사(교육원) 또는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쌀 전업농 교육을 이수한자 ㈄여성농업인	○교육이수자 순위 상향조정 및 여성농업인 반영
	②㈃---농과계 졸업자 등	②㈃---농업계학교 졸업자 등	○용어순화
	③공사지사장은 ------ 심의 선정하여야 함	③공사지사장은 ------ 심의 선정하여야 함	
	<신설>	※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순위조서 작성 생략	○행정업무 간소화
(3)(라)매매농지 행정기관 통보	<신설>	①공사는 농지매매사업 농지에 대한 매입·매도내역을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통보 ((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면적), 소유자 변동사항 등	○매도 후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여부 확인용으로 제공
(라)자연재해에 따른 납부연기	(라),①,○농어업재해대책 등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마), ①, ○(현행과 같음)	
	<신설>	※ 재해 농작물의 범위 : 지원당시의 재배작물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규모화 사업 사후관리에 위배되지 않는 재배작물도 인정	○재해에 따른 연기 허용 농작물 범위 명확화
나. 매수청구농지 매매사업	(2) 매입가격 결정 (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동법 제10조 ------	(2) 매입가격 결정 (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 제11조) ------	○법령명칭 및 조항 변경 반영
다.농지임대차사업 (2)지원대상자	(나) 지원제외자 <신설>	(나) 지원제외자 ①허위·담합으로 영농규모화 지원을 받은 자로서 쌀 전업농 자격이 취소된 자	○허위담합시 지원 영구 제외
	②제주도의 ------ 화훼 특용작물을 주품목으로 하여 선정된 자	② 〈삭제〉	○품목 구분없이 지원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계약체결 및 납부	(가)임대차 기간 : 5년이상	(가)임대차 기간 : 5년~10년	○임차기간 명확화
(라)임대차료 지급 및 납부	② (생략)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 연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	② (현행과 같음) ※ 공사는 임차자가 당해 연도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보증보험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 징수하거나 담보권 실행(근저당권 설정)으로 임차료 확보	○다양한 임차료 채권 확보 방법 반영
(마)임대농지 행정기관 통보	<신설>	①공사는 농지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임차 임대내역을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통보((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면적), 경작자 변동사항 등	○임대 후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여부 확인용으로 제공
(마)임차료의 감면	(마), ○농어업재해대책 등 -------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신설>	(바),① ○(현행과 같음) ※ 재해 농작물의 범위 : 지원당시의 재배작물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규모화사업 사후관리에 위배되지 않는 재배작물도 인정	○재해에 따른 감면 허용 농작물 범위 명확화
〈행정사항〉	가. 2005년도 추진목표 설정 및 관리 (1)기본방침 ○2005년도 지원사업비의 ------- (이하 생략)	가. 2006년도 추진목표 설정 및 관리 (1)기본방침 ○2006년도 지원사업비의 ------- (이하 생략)	○연도변경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다. 사후관리	<사업취소 사유> ①공통사항 <신설>	<사업취소 사유> ①공통사항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허위·담합 지원시 사업취소 조치
라. 보고	(나)-----사후관리상황 조사결과--------보고 (별지 제13호서식)	(나)-----사후관리상황 조사결과 ---------보고 (별지 제14호서식)	○보고서식 정정
6. 2007년도 사업신청 안내	6. 2006년도 사업신청안내 나. 신청절차 ○ 2006년에 농지를 매입 ----------(이하생략)	6. 2007년도 사업신청안내 나. 신청절차 ○ 2007년에 농지를 매입 --------- (이하생략)	○연도변경
<별표 1> 256쪽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항목 중 교육훈련실적 ※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현행과 같음)	
	·농촌진흥청, 각 도, 농협의 훈련기관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반공사, 농협의 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추가
	·쌀 선도농업경영체	·쌀 선도농업경영체,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257쪽	항목 중 경영규모 ○ (경영규모/3ha)×300점	○ (경영규모/3ha)×300점 (단, 300점을 초과 못함)	○배점범위내 만 인정
258쪽	항목 중 가산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0점 ④ 수도작후계자, ------- (이하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0점 ④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 (이하생략)	○용어정리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각종서식〉 259쪽~275쪽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 별지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에 지급내역 및 매매농지 내역 추가 등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뒷면에 업무처리흐름도 추가 등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사후관리 상황 조사결과 보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신청서식 보완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첨부서류 추가
별지 제7호서식 267쪽	〈쌀전업농사업계획서〉 ○경영계획에 관한 자세한 설명 (작성 요령) 3) 아울러, ----------쌀은 정부수매를 통해 팔 것인지, 미곡종합처리장 --------- (이하생략)	〈쌀전업농사업계획서〉 ○경영계획에 관한 자세한 설명 (작성 요령) 3) 아울러, ----------쌀은 미곡종합처리장 --------- (이하생략)	○정부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자구수정
별지 제9호서식(270쪽)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 현황 보고〉 (월별누계보고)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 현황 보고〉 - 삭제 -	○연1회 보고사항
별지 제10호서식 271쪽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 1) 전업농 당시의 주소와 -------- (이하생략)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 1) 전업농 선정당시의 주소와 -------- (이하생략)	○용어정리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Ⅱ. 농업기계화			
9. 농기계구입지원			
○예산 지원체계 개편	○1천만원미만 농기계 구입 지원은 농업 기계화사업 자금으로 지원	○1천만원미만 농기계 구입 지원은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지원	○융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체계 개편
○정부지원대상농기계 공급자격 조정	○동일모델의 수입농기계를 2개이상의 제조업체가 공급가능	○동일모델의 수입농기계는 1개업체만 공급	○제조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 해소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확대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 61개기종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 69개기종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 확대
○정부지원대상 농기계(형식)의 합리적인 관리	(신설)	○위탁공급계약체결 농기계(수입농기계 포함)중 최근 2년간 연평균 융자지원 실적이 10대미만인 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무분별한 위탁공급(○EM)에 따른 부당공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신설)	○수입농기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신설)	○농기계 구입자금의 사후관리 강화 -정부지원대상농기계의 제조번호 명판부착 의무화 ・대상농기계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등 11개 주요농기계 -사업주관기관(농협)의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산망 보완 ・동일농기계에 대한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기능 강화	○정책자금의 부당융자 및 정부지원 대상농기계의 부당공급 방지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농기계 구입지원 사후관리	(신설)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 보증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 농협중앙회는 사후봉사 이행보증 농기계의 융자 실적을 농기계조합에 통보 - 농기계조합은 사후봉사 이행보증 실적 대비 융자 실적 분석 강화	○A/S체계 확립으로 농업인의 피해예방 -사후봉사이행보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
	(신설)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가 사망시 적격 상속인에게는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을 잔존대출기간 이내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지원	○상속농업인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신설)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부당공급을 조장한 제조업체는 일정기간 농기계 공급자 자격제한 및 융자 지원 한도액 하향조정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부당공급 방지
	(신설)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지역 농협에 통보하도록 함	○정책자금(농기계 구입 지원)의 효율성 제고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0.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내용	○사업비 : 250백만원/개소	○사업비: 300백만원/개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등을 사업비에 포함
○사업시행체계 변경	○시·군에서 작성한 농기계 임대사업추진계획서를 도지사가 승인·시행토록 함	○시·군에서 작성한농기계 임대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부장관이 승인·시행토록 함	○효율적인 사업추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등 사후관리 지원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 중 임대농기계 구입비 (최소 250백만원 이상)를 제외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60평이상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 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 (컴퓨터 및 S/W 구입) - 운영비 : 영농시기 중심으로 임작업자 운용 등 관리비(연간 10백만원이내)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기준 명시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2. 농기계사후관리지원			
①농기계보관 창고 지원			
○예산 지원체계 개편	○농기계 사후 관리지원 자금으로 지원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융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②농기계수리용 부품·장비지원			
○예산 지원체계 개편	○농기계사후 관리지원 자금으로 지원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지원	○융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지원대상 추가	(신설)	○폐농기계처리장은 지게차 및 카고크레인 지원가능	○폐농기계 상 하차시 작업편리성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지원대상 우선순위자 추가	(신설)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반영하여 지원	○폐농기계 수거 활성화 유도
○사후봉사업소의 사후관리 강화	(신설)	○불량부품을 유통시킨 사후봉사업소의 제재 - 1차 : 경고 - 2차 : 수리용부품 장비 확보지원 자금 지원제외 및 회수 - 3차 :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	○불량부품 등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3. 마늘경쟁력제고지원			
<생산기계화>			
1. 지원대상농기계	①마늘파종기 ②마늘수확기 ③마늘쪽분리기 ④마늘쪽선별기⑤마늘줄기절단기	①~⑤ 현행과 동일, ⑥주아씨마늘수확기	○주아재배 증가에 따라 신규 개발된 주아 씨마늘 수확기를 지원대상 기종에 포함
<작목전환>			
1. 지원대상	○본인 소유농지에 10a(300평)이상 재배한 농가로서 농가의 마늘전체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여 마늘생산을 중단코자 하는 농가	○'04~'05년 사업대상자중 마늘작목전환사업으로 "마늘 작목전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내용을 이행한 농가	○'05년 신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06년부터는 계속사업만 수행하게 되므로 기 약정체결 농가만을 사업대상으로 함
2. 사업신청	○'05. 5월한	○신규신청 없음	○신규사업 종료
3. 사업신청 적합여부 확인	○농협의 피복용 비닐 등 농자재 판매 및 계약재배 상황, 신청인의 농지소유 면적 및 임차실태 모니터링	○'04~'05년 『마늘작목전환 약정』 체결한 농가에 대해 "사업신청 적합"여부 대신 "약정이행여부" 확인	○신규사업자가 없음으로 계속사업자에 대한 약정이행 여부만 확인
4. 보고사항	○작목전환사업 접수결과 : 6월말 ○작목전환 약정 체결결과 보고 : 다음연도 1월말	○접수 및 약정체결결과 보고 생략	○신규신청과 관련한 보고사항 생략
<마늘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전체 삭제	○'05년 사업종료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6.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③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1. 포장재비지원	○ 지원대상평가 -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자 조직에 대한 농산물포장재는 평가 없이 신청량의 100% 지원 ○ 지원대상포장자재 - 골판지,그물망 (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 포장규격 - 품목별 포장치수, KS 69개 모듈 ○ 지원비율 - 포장출하율 30%미만 : 40% 보조 - 포장출하율 80%이상 : 20%~25% 보조 - 기타 : 30% 보조	○ 지원대상평가 -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자 조직도 평가후 지원** (조직,실적, 상품고급화, 소비지점검 결과, 품질관리 활동 등 평가) ○ 지원대상포장자재 - 골판지,그물망 (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용기 (화훼류에 한함)** ○ 포장규격 - 품목별 포장치수, KS 69모듈 또는 **파레트 평면 적재 효율 90% 이상 포장재** ○ 지원비율 - 포장출하율 30%미만 : 40% 보조 - 포장출하율 30%이상 : **30% 보조**	○ 05. 사업지침 예고사항 - 친환경, 품질인증농산물은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지원 ○ 폐기물관리법에 저촉 되지 않은 친환경포장재 반영 ○ 농산물표준규격 개정고시 반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05-15, 11.24) ○ 지원비율(6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 현행)20,25,30, 35,40,45· 개선) 30,35,40,45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포장재제작협의 - 신규 제작전 농관원 출장소와 협의	○ 포장재제작협의 - 동일포장재 **추가제작 또는 농협에서 작목반을 대신하여 공동제작 하는 경우에는 협의 생략**	○ 포장재 제작협의는 표준규격 포장재 재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또는 농협이 제작시에는 협의 생략 가능 - 농업인이 농번기에 농관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해소
	○ 포장재 제작 샘플제출 - 농관원에 포장재비 신청시 포장재 샘플 1배 제출	○ 포장재 제작 샘플제출 - 농관원에서 **현지 출장시 확인한 경우에는 샘플 제출 생략**	○ 포장재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 - 현지확인으로 대체 가능
2. 포장화 우대품목지원	○ 포장화 우대품목 출하확인서 - 해당사업장에서 수기 작성 후 **출하처** 농관원 출장소로 10일이내 통보	○ 포장화 우대품목 출하확인서 - 해당사업장에서 수기 작성 후 **사업장관할 농관원**에 10일이내 통보, **농관원 전산시스템등록**	○ 농관원개발 품질관리 전산시스템 개발로 업무처리 효율화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 공동선별비지원	○출하처 규정 - 없음	○출하처 규정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업자**	○지원대상 출하처를 명시하여 지침해석 혼선방지
	○공동마켓팅조직에 대한 지원방법 - 없음(산지유통전문 조직보다 10% 우대 조항만 명시)	○공동마켓팅조직에 대한 지원방법 - 단독형 공동마케팅조직은 산지유통전문 조직에 대한 지원절차 준용 (지원비율은 10% 가산) - **사업연합형 공동 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방법 구체화** · 참여산지유통전문 조직 단위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인정 · 참여 조직 자체 출하 물량과 공동마케팅 조직을 통해 출하한 물량 별도기표 및 구분 관리 · 참여조직 자체 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간주 (매취:30%, 수탁:40% 지원) · 공동마케팅조직 명의로 출하시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보다 10%가산 (매취 :40%, 수탁:50% 지원)	○공동마켓팅 조직에 대한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구 분	현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보조금 신청절차 - 산지유통전문조직 → 시군지부(확인) → 지역본부취합 → 농관원지원 → 농관원출장소(일차여부확인)→ 보조금지급(지원→산지유통전문 조직)	○ 보조금 신청절차 - 산지유통전문조직 → **시군지부+농관원 출장소 공동현지 확인** → 지역본부 취합 →농관원 지원 → 보조급 지급 (지원→산지유통전문조직)	○ 시군지부와 농관원 출장소에서 사전 확인후 공동선별비를 지급토록 개선 - 농협과 농관원 출장소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확인 하도록 개선
	○ 연도말 신청 종료 기준 - 11.30일까지 선별, 출하 물량 보조금을 12.10일 까지 신청	○ 연도말 신청 종료 기준 - 11.30일까지 **대금정산을 완료**한 출하 물량 보조금을 12.10일 까지 신청	○ 공동선별비 신청 종료 기준을 출하 물량에서 대금정산을 완료한 기준으로 명확화
	○ 전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지원 - 전년도 12.1일 이후 출하 물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 전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지원 - 전년도 12.1일 이후**대금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다만, 익연도 2월말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전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신청기간 명시하여 사업을 신속히 처리
	○ 사업계획변경 - 중앙본부에서 일괄 변경후 농관원 통보 시에도 개별 사업장 에서 농관원으로 사업변경서 제출	○ 사업계획변경 - 중앙본부에서 일괄 변경후 농관원 본원통보시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이 농관원 출장소에 **개별사업변경서 제출 생략**	○ 농협중앙회에서 농관원 본원통보 → 지원 →출장소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7. 산지유통활성화지원			
1. 목적 및 추진방향 등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일반조직 등으로 각각 지정·운용	○ 각각의 별도 지침으로 지정·운용해 오던 산지유통조직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등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시너지효과 제고	○ '04 농림사업총괄평가 결과에 따른 산지유통자금 통합권고를 반영 - 유통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산지 규모화·광역화·기업화된 산지 마케팅혁신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2. 지원대상	○ 생산자 단체 - 회원농협, 농업법인 ○ 전문조직의 지원대상중 연합사업조직	○ 생산자 단체 및 지방공사, 상법상 법인(농업법인이 출자한 경우에 한함) ○ 전문조직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연합 효과 미흡, 개별적으로 전문조직 또는 시·군단위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유도	○ 공동마케팅조직 출범, APC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운영사례 등의 소비지 및 산지의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
3. 지원자격 및 요건 <공동마케팅조직>	○ 매출액 100억 이상 원칙 - 비법인 조직의 경우 10억원 이상 예외 인정 ○ 농협 이외(농업법인등 외) 공급지역을 3개 시군 이상 - 단, 출하조직중 법인격(회원농협 또는 농업법인) 출하조직 1개 이상 확보	○ 좌동 - 비법인 조직의 경우 30억원 이상으로 강화 ○ 좌동 - 단, 출하조직중 법인격(회원농협 또는 농업법인) 출하조직 2개 이상 확보	○ 공동마케팅조직 예외인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건을 강화
<산지유통 전문조직>	○ 매출실적 30억원 이상 - 단, 원예농산물 및 그 가공품 판매실적에 한함	○ 매출실적 30억원 이상 - 단, 원예농산물 및 그 가공품 원료구입 자금 실적에 한함	○ 신청 요건을 '05년에 도입된 「산지유통종합평가」체제에 부합하게 자격요건 강화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산지일반 조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회원농협 ,농업법인, APC 운영자 등	○ 좌동 - 지원대상 : 광역합병조합, 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화훼비회원조합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상법상 법인 농업법인이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 산지유통자금 통합취지에 부합하게 지원대상 조직을 구체화·명확화
	○ 자금용도 - 작목반(출하선도금), 지역조합(매취자금), ,APC운영자(운영자금), 화훼비회원조합 (운영자금 등으로 운용 * 자금의 대부분은 작목반 소속의 농가에 출하선도금으로 지원	○ 좌동 -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APC 또는 가공공장 원료구입자금, 유통사업운전자금, 시설개보수 등 유통종합자금 으로 운용	○ 단순 대출취급기관으로서 출하선도금 운용보다 직접 사업대상자로 참여하여 산지규모화·현대화 등을 통한 산지유통 주체로서 육성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및 자금사용 용도를 개선 및 보완
4.지원대상 품목	○ 지역조합의 부업축산의 경우 인정	○ 부업축산 불인정	○「산지유통종합평가」 체제에 부합하게 일원화 (매출실적 및 자금운용실적 불인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05년도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경우 70억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마케팅조직은 한도초가 가능. 전문조직중 사업연합·광역조직은 예산범위내 에서 예외로 인정 ○산지일반조직의 경우는 출하선도금금 (작목반당 약 1억원이내), 매취사업 (조합당 2억원 이내), APC운영자금 (30억원 이내)등으로 지원	○공동마케팅조직 (150억원 이내), 전문조직 (70억원 이내), 일반조직 (30억원 이내)으로 각각 차등지원 - 공동마케팅조직에 지원된 자금은 2회차 (6년) 사업 완료후 정부지원자금의 50%를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된 50% 자금은pool화하여 운용 (1년이내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조직의 지원한도 차등화 (I그룹→70억원 이내, II→50, III→30)	○산지유통조직 사업통합 및 산지유통 종합평가를 충실히 반용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상·하위 유통조직간 차등지원 추진
6.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 재정립	○사업주관기관의 경우, 공동마케팅조직 (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 각각 역할분담), 산지유통전문조직(농협중앙회), 산지일반조직의 출하선도금 및 매취자금(농협중앙회), APC 운영자금(유통공사) 등으로 일부 사업에 한에 이원화 ○대출취급기관의 경우, 공동마케팅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일반조직 출하선도금 및 매취자금·화훼비회원조합(농협), APC 운영자금(유통공사 및 농협)	○산지유통조직사업을통합함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을 농협중앙회와 유통공사를 복수로 지정·운용 * 산지유통 유사사업 통폐합에 따른 대출취급 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고객중심의 편의제공 및 선택권 다변화 유도	○산지유통조직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사업주기관·사업자 선정평가 기관을 단순화·명료화하여 일관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고 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7. 조합공동사업 법인 무이자 자금 지원	○<신설>	○공동마케팅조직중 사업연합조직으로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한 조직에 한에 무이자자금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 년3 회까지 지원가능)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정부지원 무이자자금에 상응(1:1)하여 농협중앙회도 자체자금 무이자)을 지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시 초기사업 연착륙을 유도 하기 위해 한시적 으로 무이자자금 지원
8. 우수조직 및 부진조직 경영컨설팅지원 등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경영 인력과)으로 정부지원 APC 컨설팅 지원 ※ 경영컨설팅지원에 평가결과 미반영	○평가결과 상위 25%이상 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부진조직(하위 5% 이하)은 「경영클리닉지원」 실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에는 「농업경영컨설팅 」, 부진조직에는 「경영클리닉 」을지원함으로써 평가결과 환류 및 효율성 제고
9. 가공공장 매출액 및 운영자금 실적인정 제한	○자금운용실적 인정기준에서 산지유통조직의 가공공장의 원료구입자금 100% 인정하고 가공공장 운영자금도 유통사업의 운영자금 30%내에서 인정	○자금운용실적 인정기준 중 가공공장의 원료구입자금은 100% 인정하고 그 운영자금 운용실적은 불인정	○「산지유통종합평가」 체제에 부합하게 자금 사용용도 및 운영실적 인정 기준의 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립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22. 농축산물자조금 조성지원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4.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다.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의 범위 및 지원 요건			
○지원대상단체의 범위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단, 자조금납부하는 생산자가 최소 100가구 이상이어야 함)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비율 또는 전국 단위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비율이 30%이상(단, 자조금납부하는 생산자가 최소 100가구이상이어야 함)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자조금단체의 생산 또는 출하점유비율이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 하나의 기준에 의한 비율 산정이 되도록 개정
	-단, 단체구성원의 출하량(액)의 비율이 50%미만인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50%이상의 구성원 출하량(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중단함.	-단, 단체구성원의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비율이 50%미만인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50% 이상의 구성원 생산량(액) 또는 출하량(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마. 보조금 지급대상 자조금조성액 및 지원조건			
○자조금 조성액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액)의 1% 이내로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액)의 **3%** 이내로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자조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3%로 상향 (05.6 농안법 시행령 개정)
《추진체계》			
나. 사업담당부서			
○제도총괄	○제도총괄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0-1829 ~30)	○제도총괄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0-1864~5)**	○'05년 4월부터 업무이관
다. 사업시행절차			
3)자조금사업계획서신청	○보조금지원실적이 없는 자조금조성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보조금지원실적이 없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사업개요와 추진체계의 불일치 수정, 사업개요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설립후 1년이상의 자율운영을 전제조건으로 요구
6)보조금교부 및 지급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당해연도 자체 조성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2월중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동 사업의 보조금지급은 당해연도 자체 조성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4/4 **분기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자조금 조성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월 시에는 사전에 이월사유를 농림부 사업부서에 1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함**	○시장여건에 따라 사업이 선행되어야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조금 지침이 정하는 대로 조성된 자조금에 대해서는 4/4분기까지 이월 인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행정사항》 ○품목보고서 제출	<신설>	○자조금조성단체는 2007. 1.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자조금 사업 결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품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평가 및 품목별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자조금단체의 운영능력 제고
28.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나.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 사업	○다만, 과수산업의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제외> ①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신규 과원조성	<지원대상 제외> ①신규과원조성(단, 전국조직 기존 선도회원의 규모화 시는 일정한도내에서 예외)	○전국조직 육성을 위해 해당 조직의 선도농에 한하여 일정수준의 영농규모화 촉진 및 정예농 육성 지원
다.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의 범위	①품목 전문조합 ②지역농협 ③지역농협 연합사업단(지원대상자선정은 개정될 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전제로 선정·지원)	③생산자단체 연합사업단('07년도 사업부터는 농협법에 의한 조합공동법인 등 법인으로 등록한 조직만 지원)	○연합사업단을 통합하여 명시하고, '07년부터는 법인만 지원키로한 방침 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④영농조합법인	④영농조합법인	
	⑤산지유통센터(APC), 공동마케팅조직	⑤<삭제>	
	⑥① ~⑤조직의 연합사업단 (단, 사업시행후 1년이내 법인화를 전제로 지원)	⑥<삭제>	
	※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①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준에 맞추거나 ②필요시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품목별 조직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조문 정리
	※ 연합사업단은 법인화 또는 독립 회계 및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전제로 지원하고, '07년도 사업부터는 농협법에 의한 조합공동법인 등 법인으로 등록한 조직만 지원	※ 기존 선정된 연합사업단은 법인화를 통한 독립 회계 및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전제로 지원	○조문 정리
	(3) 선정절차		
	○지자체는 지원대상 사업시행주체와 협의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지원대상농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 (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	○생산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가추천권을 생산자단체로 명시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신청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자체는 농정심의회 또는 수분야 산·학·연·관 협의회로 대체 가능)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선정절차 관련규정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8조 내지 제23조 참조	- 지역별로 사업자 선정을 시군에서 담당하거나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진행중인 것을 일원화
	<지원대상농가의 선정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구성원 - APC, 전문출하조직의 경우는 출하협약 체결자	**<지원대상농가의 선정기준>** - 비구성원인 경우는 지원대상조직과 장기 출하 협약을 체결한 자	○비구성원인 경우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가능하도록 명시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융자금이 3천만원이 넘는 사업은 대출기관에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기관은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신 설>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3천만원 미만의 사업신청자도 사전 대출 가능액을 확인토록 안내하여 사업자 선정후 융자금 대출 문제로 인한 사업포기 등을 미연에 방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추진체계> 마. 사업시행			
(2)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단 등)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 ○ 전문가협의체의 주요역할 : 사업계획 수립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경영·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협의체의 역할보다는 컨설팅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4)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 등)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신설>	○ 시·도지사(시장·군수 등)는 자금지원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 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사업비 집행체계도 A라인)과 사업시행 주체(연합사업단외 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 (사업비 집행체계도 B라인)이 모두 가능	○ 사업시행주체에게 사업대상 농업인 추천 및 사업비 집행·1차 정산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조직화 촉진 및 책임성 부여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28. 지방자율계획사업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①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 신규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단, 전국조직 기존 선도회원의 규모화 시는 일정한도내의 신규 과원조성 지원)	○사업개선 계획에 따라 조문정리
4. 사업시행 요령 가. 지원대상자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업인으로서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자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 발전 계획에 참여하는 자로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적합한 농업인 【전국조직의 정예농육성을 위한 신규과원지원】 ○전국조직의 4개 이하 회원농가(또는 기존회원의 영농승계자)로서 -농가생산량 전체를 해당 전국조직의 공동선별·공동계산에 출하약정한 자 ※ 지원상한선 : 기존 재배면적과 합하여 선도농수준인 1.5ha까지만 지원(단, 농가당 1ha초과할 수 없음) ※ 전국조직의 기준 : 2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전국브랜드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 등으로 FTA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조직(예:과수조합연합회, 참다래유통사업단)	○사업개선 계획에 따라 조문정리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나. 대상자 선정 <선정 순위>	○<신 설>	○1순위 : 전국조직의 회원으로 전국조직의 거점 APC 등과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전국조직의 조직화 촉진
	○1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신규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설치중이거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없는 경우 기존 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2순위 :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 신규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설치중이거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없는 경우 기존 산지유통센터 등 지원대상조직과 장기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출하계약의 당사자는 지원대상조직임을 명시
	○2순위 : 수출, 친환경생산단지(IFP, IPM, INM, GAP),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수재해보험 중 2개이상 참여 또는 가입한 농가(조직)	○3순위 : 수출, 친환경생산단지(IFP, IPM, INM, GAP), 과실계약출하사업, 과수재해보험 중 2개이상 참여 또는 가입한 농가(조직)	○실질적으로 적용할 농업인이 없고, 보다 선도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정
	○3순위 : 위 사업 중 1개 사업 참여 농가(조직)	○<삭제>	
<지원대상자 선정시 준수사항>	③<신설>	③전국조직 회원의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기존면적과 신규면적을 합한 지원상한선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 구비	○사업개선에 따른 준수사항 추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요건 확인> ○ <신 설>	○신규면적 지원시에는 해당 전국조직으로부터 기존 재배면적, 추천사업량 등을 확인받은 추천서를 제출한 경우만 지원 - 전국조직과의 100%출하 약정, 출하약정 위반시 제재 조치에 대한 동의서 등을 확인	○ 사업개선에 따른 요건 확인 사항 추가
다. 지원사업 (시설 및 장비)의 종류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신설>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 장비는 친환경재배와 관련 있는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시만 지원	○장비 지원의 기준 마련
	【지원제외 대상】 ④포도·감귤의 난방시설	【지원제외 대상】 ④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모든 품목에서 지원 제외
마.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예시기준"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 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을 제시하면 표준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붙임" 세부사업별 단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을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 추가 및 수정 ○조문 정리
	- <신설>	-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이내이며 30% 이상 조정할 경우는 농림부와 협의	○지원단가 상향 조정시 제한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바. 사업추진 주의사항	○우량묘목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 공급묘목은 종자 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등 잠복병해충다른 품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는 계약서를 공급자와 농가(조직)가 시장군수 입회하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우량묘목갱신, 키낮은사과원갱신 등 공급묘목은 종자 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 작성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정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현실 여건 등을 감안 조문 정리
	○<신설>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 구입 및 입찰의 일괄 추진 등이 가능하되,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 - 작업 공정이 간단하여 농가 자체 시공으로 추진하여도 부실시공 등의 우려가 없는 사업은 공동 자재 구입후 개별시공이 가능 다만, 사업시행주체가 개별 시공이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작업공정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여야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업은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조합 등에서 공동입찰·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가 중심이 되어 일괄 자재 구입 및 입찰이 가능토록 명시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②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4. 사업시행 개요 다. 지원대상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인 지구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 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FTA기금 자율사업 지원대상 조직의 규모화 등 사업연계를 위하여 출하약정율 명시
6. 사업계획수립·시행 다.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3) 시장·군수가 ...조사를 하여야 함	○<신설>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에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라.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6) 기본조사 ....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 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 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80%이상출하약정 여부 등)	
④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4. 사업시행 요령**	<선별기 선정시 고려 사항> 2. 산도오차 0.1%이내(감귤 선별기에 한함)	2. 산도오차 0.2%이내(감귤 선별기에 한함)	○현행의 오차범위는 실험실 수준에서는 가능하나 상용화된 수준은 0.2%이내 수준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부대사항)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신 설>	(부대사항) 6. <좌 동>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당도와 산도 분석 기관 명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운영자(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로서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변경 : 시·도지사 승인 (농림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후 초기년도에는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 등)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 시·도지사 승인 (농림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운영자 변경은 농림부와 협의 및 승인 사항으로 명시
	⑤ 가공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시행 세부추진절차('05.5.23)를 지침에 반영 (별첨 참고)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29.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6.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농협, 영농 조합법인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 묘목생산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과수묘목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에 참여하는 자	○지원대상에 농업기술센터 명시
33. 사료사업 지원 **①조사료생산기반확충** 1. 지원대상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기타	○초식가축사육농가	○초식가축 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농가 (다만, 축산업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축산업등록제의 조기정착 유도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 축산농가	○초식가축사육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초식가축 사육농가 중 축산업등록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지역축협, 한우회, 낙우회등	○축산업등록제 정착유도, 조합, 생산자단체 중심의 총체보리 수요 확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2. 보고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기타	○조사료 생산이용 계획 및 실적	<삭제>	○필요성이 적은 보고서 삭제
○조사료사업 계획 및 실적<서식1>	○계획 삭제 ○대규모사료작물재배 추가	○필요성이 적은 보고서 삭제 ○신규사업 항목 추가	
○사료작물 종자 공급 계획 및 실적 (춘파,추파)	○사료작물 종자 실적 보고 제출(12.31)	○필요성이 적은 보고서 삭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사업계획 및 실적제출	○사업실적제출시 기계·장비 지원실적 포함(7.30) ○<서식5>양식 수정	○보조지원되는 기계·장비 사후관리 강화 ○불필요한 항목 제외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사업	<신설>	○사업추진실적보고 <서식9>	○신규사업 보고서 추가
3. '07 지원내용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시 비닐대 지원	○사료용 곤포사일리지 제조시 비닐대 지원	○곤포사일리지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제조·운송비 지원단가 : 톤당 50천원	○비닐대 별도 통합지원으로 지원단가 조정 ※ 조정단가 추후통보	○비닐대 별도지원에 따라 제조·운송비 단가 조정
4. 세부사업 지원내용 <별표1>			
○초지조성 및 보완	○초지조성 및 보완에 따른 비용지원	○초지조성·보완비용중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 제외	○퇴·액비 활용으로 친환경축산 구축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자재공급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계약공급	○농협중앙회 일괄공급 ,지역조합에서도 공급 가능 ※ 기금지원은 농협단가기준	○자재공급 원활화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기계·장비(보조,융자	<신설>	○대상자 선정 검토시 보관시설 확보 여부 등 사후관리능력 확인	○지원장비 사후관리 강화
<신설>	○구입단가는 '농기계구입지원사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표 적용	○장비구입단가의 객관성 확보	
5.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별도지침 시달	○사업시행지침 명시	○사업추진 효율화
6.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사업	<신설>	○사업시행지침 명시 - 세부시행요령은 농협중앙회 마련·시달	○사업추진 효율화
② 사료사업지원			
〈사업명〉	② 사료사업지원	② 사료산업 종합지원	○'06년 사료관련 예산을 "사료산업 종합지원"으로 통합하여 종합자금으로 추진
5. 사업시행요령 가.사업개요			
(1)사료제조시설 나)지원대상	○사료공장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개보수 : 배합사료제조업등록업체 ○광우병(BSE)예방 관련 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개보수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섬유질가공사료제조시설 : 일반업체, 농축협·영농조합법인·양축농가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개보수 :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섬유질가공사료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일반업체, 농축협·영농조합법인·양축농가	○사료공장 HACCP 인증 준비를 위한 개보수는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다. 추진체계 (2) 사업담당부서	(나)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 농림부 : 축산물위생과 ○ 농협중앙회 : (주)농협사료 ○ 한국사료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나)사료원료 구매 지원 ○ 사업총괄 : 농림부 (축산물 위생과) ○ 사업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 : 시·도(축산담당과),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관련단체"라 함) : 사업대상자 추천 및 사후관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도 및 관련단체에서에서 원료구매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천토록 함
(3) 사업시행 (나)사료원료 구매사업	(신 설)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아래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①사료공장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는 예외) ②BSE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업체 ③사료 원료의 자체 확보계획 수립 및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사료원료 구매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함
34.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3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30.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 사업명칭 변경
가. 사업개요 (2) 사업대상자 (나)공동시설	○ 축분비료 유통센터로 지정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축분퇴비유통센터(공동퇴비장)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퇴비화 하는 조합	○ 농협퇴비장까지 지원 대상 확대
(라)액비저장조설치	○ 농협작목반	○ 농·축협작목반	○ 축협작목반도 지원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마)축분비료유통센터	○농협작목반	○농·축협작목반	○ 축 협 작 목 반 도 해당됨
	<신설>	(바) 액비살포비 지원 ○축분비료유통센터 , 액비 살포 민간전문업체	○액비살포비 지원 추가
(3)사업내용			
(나)공동시설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중략> 축산 폐수탈색장치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중략> 축산 폐수탈색장치, 가축음용수 정수장비	○가축음용수 정수장비를 공동시설 지원 대상으로 추가
	○축분퇴비유통센터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조합에 한함) : 비료제조시설 <중략> 포장시설 등	○축분퇴비유통센터 (공동퇴비장) : 농협회원조합에 한함 - 교반기 등 퇴비화장비, 후숙·제품보관 창고	○농협퇴비장까지 지원 대상 확대
	<신설>	(바) 액비살포비 지원 ○ ha당 150천원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추가
(바)지원규모 및 조건	(바)지원규모 및 조건	(사)지원규모 및 조건	○항목 변경
2)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 법인체 기준)	<신설>	축분퇴비유통센터 (공동퇴비장) : 50백만원/개소	○축분퇴비유통센터의 지원한도액 지정
4)지원조건	○지원비율 - <신설>	- 액비살포비 : 보조50%, 지자체 50%	○액비살포비 지원 추가
나.추진체계			
(9)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본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계약 청약자 또는 낙찰자를 공개	○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제도 도입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1)기타사항 (가)사업추진상 유의사항	○액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前)처리 시설, 고액분리기 우선지원 - 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1999-110호('99.7.8) <중략>	○액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前)처리 시설, 고액분리기 우선지원 - 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2004-51호(2004.3.24) <중략>	환경부 고시 개정
다. 사업자금의 집행과 정산 (4)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별 해당시설 준공 및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고,<중략>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을 준수하고 <중략>공사대금 지불 영수증 또는 사공 납품 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별 해당시설 준공 및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고,<중략>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을 준수하고 <중략>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계좌입금 확인서만을 증빙서류로 인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라. 행정사항 (1)사후관리 (가)사후관리 사항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중략> 자금회수 등 적절히 조치 - <신설>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중략> 자금회수 등 적절히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휴·폐업 축산 농가 등에 대한 자금회수 명시
35.경주마육성 31. 축산계열화 사업 ②경주마 육성			
□ 지원기준 〔별표 1〕	〈신 설〉	○ 승마장 - 개인 : 보조(20%), 지방비(20), 융자 (30),자담(30) - 지자체 : 보조(50%), 지방비(50)	○ 생활승마 저변확대 및 마필산업 종합적 육성 차원에서 지원기준 마련
□ 지원기준 〔별표 1〕	○ 사육시설 - 마사 : 4.5평/두이내 - 관리사 : 15평/호이내 - 창고 : 2평/두이내 - 패독 : 12평/두이내 ○ 육성조련시설 - 실내마장 : 300평/개소 - 자동보행기 : 0.17대/두	○ 사육시설 - 마사 : - - 관리사 : - - 창고 : - - 패독 : - ○ 육성조련시설 - 실내마장 : - - 자동보행기 : -	○경주마생산농가의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관련시설 설치시 지원규모 폐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6. 한우산업지원 **①송아지생산안정사업**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신 설>	※ 축산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06년 신규가입을 제한한단, '05년까지의 계약이 이월된 농가는 기존계약 분까지만 유효	○ 축산업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미등록 농가의 사업 참여를 제한 ※ 축산정책과-3405호('05.9.12)에 의거 '0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반영토록 협조 요청된 사항임
	다. 사업내용 ○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 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신 설>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시 농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농협중앙회로 납입 ※ '05년까지의 농가 및 지자체 부담감은 '06년 3월말까지 농협중앙회에 납입	○농가 및 지자체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협중앙회로 이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추진체계>	다. 세부 추진내용 ○계약대상자 - 한우 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계약대상자 -한우 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 축산법 제20조제 1항제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05년 이전의 기존계약이 이월된 경우는 기존 계약분까지만 유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축산업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미등록 농가의 사업참여를 제한 ※ 축산정책과-3405호(‘05.9.12)에 의거 ’0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반영토록 협조 요청된 사항임
	마. 안정사업자금 관리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지역축협에 별도 계정 설치 ○계약자부담금과 지자체 부담금은 관할 지역축협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지역축협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최소한 축산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 수익률 수준을 유지해야 함	○농가 및 지자체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그동안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협중앙회로 이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6. 200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다.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 ○ 계약대상자 : 한우 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 (법인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이 한우 암소 사육자인 경우와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다.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 ○ 계약대상자 : 한우 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 (법인 포함) - 축산법 제20조제 1항제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05년 이전의 기존 계약이 이월된 경우는 기존 계약분까지만 유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이 한우 암소 사육자인 경우와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축산업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미등록 농가의 사업참여를 제한 ※ 축산정책과-3405호 ('05.9.12)에 의거 '06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작성시 반영토록 협조 요청된 사항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② 품질고급화 장려금 4. 연도별 지원계획			
	<신 설>	※ 한우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은 '06년 사업이후 종료 계획임	○ 축산물브랜드의 활성화 등으로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우고기의 품질이 일정 수준 우수해 짐에 따라 사업을 종료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나. 지급장소 및 금액 ○지급금액 (두당/천원) (한우) 1^{++}A, 1^{++}B, 1^{+}A, 1^{+}B 등급 : 200, 1A, 1B 등급 : 100 (육우) 1^{++}A, 1^{++}B, 1^{+}A, 1^{+}B, 1A, 1B 등급: 100	나. 지급장소 및 금액 ○지급금액 (두당/천원) (한우) 1^{++}A, 1^{++}B 등급: 200천원, 1^{+}A, 1^{+}B 등급 : 150, 1A, 1B 등급: 100 (육우) 1^{++}A, 1^{++}B, 1^{+}A, 1^{+}B 등급 : 100 천원 1A, 1B 등급 : 70	○1^{++}등급이 '04년 12월에 신설됨에 따라 등급간 장려금을 세분화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축협은 서식 9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참여 계획서를 제출	다. 사업시행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축협은 서식 9·10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참여 계획서를 제출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농·축협의 사업참여시 농가 및 사육현황(서식 10)을 첨부토록 함
	○ 생산자단체는 농가 소출하시 서식 1에 따라 해당 농가가 출하축의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등급판정시 1부를 제출(또는 농가로 하여금 제출토록 함)하고 1부는 자체 보관·관리	○ 생산자단체는 농가 소출하시 서식 1에 따라 해당 농가가 출하축의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등급판정 신청시 1부를 제출(또는 농가로 하여금 제출토록 함)하고 1부는 자체 보관·관리	○ 부정행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자확인증명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
	<신 설>	-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는 생산자확인증명서 발급시 당해농가의 거세우 사육두수를 확인해야 하며, 농가의 당해연도 최초 발행일 현재의 거세우 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는 생산자확인증명서 발급을 제한	○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06년 사업시행지침 개선·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신 설>	※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가축(또는 고기)의 등급 판정 신청일 이후에 발급된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품질 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부정행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자확인증명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은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1개월이내에 송금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은 축산물 등급 판정소는 지역축협별로 자금을 송금	○자금배정 시점 등을 감안하여 송금 기한을 삭제
6. 2007년도 사업시행 요령	<신 설>	※ 한우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은 '06년 사업이후 종료계획임	○ 축산물브랜드의 활성화 등으로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우고기의 품질이 일정 수준 우수해 짐에 따라 사업을 종료
	[서식1] <신 설>	[서식1] 서식내에 "당해연도 최초 발행일 현재 거세우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누계" 항목을 신설하고, "거세여부" 항목 삭제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06년 사업시행지침 개선·반영
	[서식2] <신 설>	[서식2] 서식내에 "당해연도 최초 발행일 현재 거세우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누계" 항목 신설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06년 사업시행지침 개선·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7. 가축개량사업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축개량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	<삭 제>	○용어정리
5. 세부사업 시행요령	가. 한우개량 (1) 기본방침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 활용	가. 한우개량 (1) 기본방침 ○규모화된 우수 번식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선발	○육종농가 도입으로 암소와 수소에 대한 동시 검정을 통해 개량의 효율 및 신뢰도 향상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가)한우개량농가육성 ①추진배경 <신 설>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가)한우개량농가 및 육종농가 육성 ①추진배경 ○한우육종농가 '05년부터 한우개량농가 중에서 규모화 된 우수 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 암소와 수소를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선발·이용하기 위해 추진	○육종농가를 통한 보증 씨수소 선발·이용에 관한 지침 보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②지원대상 <신 설>	②지원대상 ○ 한우육종농가(도 축산기술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센터'라 한다)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업주관기관이 한우개량농가로 선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	○ 육종농가지침 보완
		※ 다만, 축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한우개량농가가 소 사육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업등록제의 조기 정착 유도
	③ 사업내용 ○ 개량농가의 등록우(혈통·고등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등록우 관리	③ 사업내용 ○ 한우개량농가·육종농가의 등록우 관리 및 육종농가 암송아지 검정	○ 육종농가의 사업내용 보완
	2)지원내용 가)한우개량농가 육성	2)지원내용 가)한우개량농가 및 육종농가 육성	
	<신 설>	○ 한우육종농가에 대한 암소 검정사례비, 체중측정기 설치비, 질병검진비와 검정결과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경우 개량장려금을 지원	○ 육종농가 지원내용 명시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다)대상별 지원내역 및 재원 ○ 지원대상 <신 설>	다)대상별 지원내역 및 재원 ○ 지원대상 - 한우육종농가 : 검정 암소의 검정사례비, 체중측정기 설치비, 질병검진비,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개량장려금	○육종농가 지원내용 명시
	<추진체계>	<추진체계>	
	(가)사업주관기관 <신 설>	(가)사업주관기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한우개량농가 및 관리 조합 지원 ·관리	○사업주관 조정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관리조합 지원	○가축개량사업소 : 한우육종농가 지원 ·관리, 한우 능력검정 및 한우정액 생산 · 공급	○육종농가 사업주관 명시
	(나)사업담당부서 <신 설>	(나)사업담당부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02-2080-6551~6573)	○사업주관 조정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총괄팀(☎041-661 -4693)	○가축개량사업소 검정팀 (☎ 041-661-4694)	
	(다)사업시행 1)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가축개량사업소는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할 시에는.....	다)사업시행 1)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할 때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지침 보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⑥등록우관리 ○귀표부착 : 관리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및 기존 귀표 탈락시 지도원이 부착	⑥등록우관리 ○귀표부착 : 관리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및 기존 귀표 탈락시 지도원이 부착하되, '06.1.1 이후 출생한 송아지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귀표번호를 반드시 사용	○개체식별번호 표준화도입
	⑦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의 송아지 생산 신고에 의하여 2주 이내 현지 확인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등록우 관리자료에 생산내역 정보를 전산입력하며, 6개월령 이내에 혈통등록 심사하여 합격축은 전산등록	⑦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의 송아지 생산 신고에 의하여 2주 이내 현지 확인하여 귀표를 부착하고, 등록우 관리자료에 생산내역 정보를 전산입력하며, 6개월령 이내에 혈통등록 심사하여 합격축은 전산등록. 다만, '06.1.1 이후 출생한 송아지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귀표번호를 반드시 사용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도입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⑪개량농가 관리	⑪개량농가 관리	
	<신 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연 1회 이상 관리조합과 농가 한우개량농가의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농림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각각 제출	○재정 성과평가 사항 보완
	나)한우 육종농가 선정	나)한우 육종농가 선정	○육종농가 지침보완
	<신 설>	<한우육종농가(도센터)의 사업 신청시 갖추어야 할 요건 >	
	<신 설>	○생후 12개월령이상 한우 혈통·고등등록 암소를 50두(도 센터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도센터 포서 계절번식을 50두(도센터 100두)이상 실시할 농가(도센터)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축산업등록제에 등록한 농가	○축산업등록제의 조기 정착 유도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한우개량농가육성중 "③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에 의함	
	<신 설>	⑥가축개량사업소는 한우육종농가 선정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한 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다)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공급 <신 설>	다)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공급 ○가축개량사업소는 육종농가로 선정된 도센터 및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한우 씨수소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방안을 수립	○도센터를 활용한 한우의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한 지침보완
	⑨한우 생체단층 촬영 ○사업시행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지역축협 및 한국종축 개량협회 ○측정두수 : 5,000두 ○측정대상우 : 당대검정우 및 어미소, 고등등록 ,고등등록대상우 및 현장후대검정우 ○자료활용 : 축산연구소는 초음파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능력분석 후 국가단위 한우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농림부에 '05. 2월말까지 보고 ○사업비 지급 - 지역축협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전송받은 <서식 5>에 의거 사업비 지급대상축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청구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이에 의거 두당 20,000원을 지급	⑨한우 생체단층 촬영 ○사업시행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사업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측정두수 : 1,000두 ○측정대상우 : 한우육종농가의 12개월이상 혈통·고등등록우 ○자료활용 : 가축개량사업소는 초음파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능력을 분석한 후 한우육종농가의 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매년 분석결과를 농림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익년 2월말까지 각각 통보 ○ 사업비 지급 - 가축개량사업소는 생체단층촬영을 직접 실시하되,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실확인 후 두당 20천원 한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육종농가의 중심으로 한우생체단층 촬영 및 분석하여 씨수소 선발에 활용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⑩도축장 바코드귀표 출현우 도체성적조사	<삭 제>	○자율사업으로 추진,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의 자료활용
	< 행정사항 > <신 설>	< 행정사항 > (다)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실시 ○시·도는 축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을 다음에 의하여 최소한 격년제로 시행. 다만, 시·도에서 필요한 경우 매년 계속 실시 -짝수년도(2006) : 강원·충북·전북·경북 -홀수년도(2007) : 경기·충남·전남·경남·제주 및 희망하는 특별시·광역시	○농림제도개선과제로 시·도에서 자격시험을 순번에 의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불편 해소
	나. 젖소개량 (3)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젖소산유능력검정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젖소개량부)는 젖소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9호), 본 지침서 및	나. 젖소개량 (3)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유우군 능력검정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젖소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9호), 본 지침서 및.....	○사업주관 조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2)사업별 지원대상 및 재원 ㅇ젖소산유능력검정 : 검정 참여농가에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 신 설 >	2)사업별 지원대상 및 재원 ㅇ유우군 능력검정 : 검정 참여농가에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 다만, 축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 참여농가가 소 사육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용어정리 ㅇ축산업등록제의 조기 정착 유도
	(다)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젖소산유능력검정 ③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신 설 >	(다)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젖소산유능력검정 ③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ㅇ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연 1회 이상 관리조합과 농가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이를 농림부와 가축개량 총괄기관에 각각 제출	ㅇ재정 성과평가 사항 보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⑤ 사업비 지원방법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미등록우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된 후 90일 이내에 등록된 경우, 미지급된 보조금의 소급 지급 허용 < 신 설 >	⑤ 사업비 지원방법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모든 유우군 검정우에는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06.1.1 이후 출생한 송아지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 귀표 번호를 반드시 사용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에 유우군 능력검정 개체혈통관리 시스템에 귀표번호와 검정우에서 생산된 미경산우의 초종부 수정기록을 각각 입력	○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도입
	나) 젖소정액생산·공급 ○ 외국산 젖소보증종모우 및 후보종모우(Young Bull)는 도입규격과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별도 심의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한 검수단이 현지검수 또는 심사하여 가축개량사업소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도입추진(심의결과는 1주 이내 농림부에 보고)	나)젖소정액생산·공급 ○ 외국산 젖소 보증씨수소 및 고능력 수정란을 도입할 때는 도입규격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외국산 보증씨수소 도입 지침보완

<table>
<tr><th>구 분</th><th>현 행(2005)</th><th>변경안(2006)</th><th>변경사유</th></tr>
<tr><td>5. 세부사업 시행 요령</td><td>< 신 설 ></td><td>2)기타사항
가)지원 예고
○2007년 지원 예고 :신규 검정우의 검정보조비 지급을 혈통등록(부모 확인 가능 등록단계) 이상 또는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귀표 장착우에 한하여 지급. 다만, '06.1.1 이후 출생한 송아지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귀표번호를 반드시 사용
○2008년 지원 예고 :검정농가 유우군의 부모 확인 가능한 검정우의 비율에 따른 검정보조비 차등 지급
<table>
<tr><th>부모확인 가능 검정우 비율</th><th>보조금 지급 비율</th><th>비고</th></tr>
<tr><td>75%이상</td><td>100%</td><td rowspan="3">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우에 한하여 지급</td></tr>
<tr><td>50%~75%미만</td><td>70%</td></tr>
<tr><td>50%미만</td><td>50%</td></tr>
</table>
나) 전산시스템 보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국제 유전 능력평가 참여를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 후 검정우 등록체계와 전산시스템 보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td><td>○검정우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를 위한 예고사항 명시

○검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보완</td></tr>
</table>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다.돼지개량 (1)기본방침 ○PSS 유전자발현 물돼지를 감소시켜 돼지품질 고급화 (3)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1)사업내용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에서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경우 자가검정 실시 < 신 설 > ○종돈업체 순종돈에 대한 PSS유전자 검사비를 일부 보조 < 신 설 >	다.돼지개량 (1)기본방침 < 삭 제 > (3)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사업내용 1)사업내용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에서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경우 자가검정 실시 - 다만, 자가 검정을 하는 종돈업체는 연간 순종돈 생산 모돈의 4배 (순종 생산 자돈의 20%)이상을 검정하지 아니하거나 연 2회 이내 검정기관의 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자가검정 대상에서 제외 < 삭 제 > ○종돈검정소를 청정지역으로 이전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신축 확장	○자율사업으로 전환 ○자가검정기준 보완 ○자율사업으로 전환 ○종돈검정소 이전 신축 추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2)지원내용 ○지원대상자 -PSS유전자 검사 :종돈업 등록업체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신 설 > ○지원기준 -PSS유전자검사비 :검사완료돈 두당 8,500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물품구입, 우편발송, D/B구축등 2,000원 포함) < 신 설 > < 추진체계 > (가)사업주관기관 ○대한양돈협회는 검정소 검정을,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장검정·농장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D/B구축·PSS유전자 검사 사업을 추진 (다)사업시행 ○PSS유전자 검사 < 신 설 > 마. 종축등록 및 신기술보급 (1)기본방침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소 수정란이식 등 기술교육	2)지원내용 ○지원대상자 < 삭 제 > -종돈검정소 시설 :대한양돈협회 ○지원기준 < 삭 제 > -종돈검정소 시설비 < 추진체계 > (가)사업주관기관 ○대한양돈협회는 검정소 검정·종돈 검정소 시설을,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장검정·농장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D/B구축 (다)사업시행 < 삭 제 > 나)종돈검정소 시설 (생 략) 마.종축등록 및 신기술보급 (1)기본방침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가축인공수정 등 기술교육	○자율사업으로 전환 ○종돈검정소 시설의 사업 주관기관 명시 ○자율사업으로 전환 ○종돈검정소 이전 신축 추진 ○종돈검정소 시설의 사업주관기관 명시하고, PSS사업을 자율사업으로 전환 ○자율사업으로 전환 ○종돈검정소 시설의 세부사업지침 보완 ○농림제도개선과제로서 자구수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3) 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사업내용 1) 사업내용 ○종축등록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육우·젖소·돼지) 등록, 심사 및 가축능력평가대회등 부대사업 추진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 농림부의 별도 교육계획(소수정란이식 기술교육 등)에 의함 < 신 설 > 2) 지원내용 ○종축등록 : 종축등록 등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비등 소요자금중 일부 보조지원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보급 :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성 비용 등 보조 지원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종축등록, 가축능력평가대회),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대한양돈협회	(3)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사업내용 1)사업내용 ○종축등록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육우·젖소·돼지) 등록, 심사 및 가축품평회 추진 ○가축인공수정 기술교육 :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 ○돼지 공인검정원 양성교육 : 대한양돈협회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지원내용 ○가축품평회 : 홀스타인 품평회 및 도단위 가축품평회 일부 보조 지원 < 삭 제 >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홀스타인 품평회,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도단위 가축품평회)및 대한양돈협회(돼지 공인검정원 양성교육)	○지원사업 조정에 따른 자구수정 ○농림제도개선과제로서 사무지방이양에 따른 지침 보완 ○종돈검정원 교육주관 기관 명시 ○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른 내용 보완 ○농림제도개선과제로서 가축인공수정기술교육을 지방으로 이양 ○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른 내용 보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 추진체계 > (가)사업주관기관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신기술보급 사업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등록, 가축품평회 사업을 추진 ○협조기관 : 시·도 축산기술연구기관 (다)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종축등록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축등록 및 가축능력평가대회에 관한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승인 요청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보급내용,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은 농림부의 별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	< 추진체계 > (가)사업주관기관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 도단위 가축품평회 추진 ○한국종축개량협회 : 홀스타인 품평회 추진 ○도 축산기술연구기관 : 가축인공수정사 기술교육 (다)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종축등록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홀스타인 품평회에 관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 추진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각 도는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가축인공수정사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조치 - 대한양돈협회에서 돼지 공인검정원 양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승인을 받아 추진	○지원내용 조정에 따른 지침보완 ○지원내용 조정에 따른 지침보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세부사업 시행 요령	2)사업추진방법 ○가축능력평가대회 : 사업주관기관이 대회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 소 수정란이식 및 가축 인공수정 기술교육 · 교육계획을 농림부에서 별도 수립하여 추진	2)사업추진방법 ○가축품평회 : 사업주관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홀스타인품평회는 농림부 승인을 받아 추진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보급 - 가축인공수정 기술교육 ·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이 가축인공수정사 기술교육을 수립하여 실시	○지원내용 조정에 따른 지침보완
40. 축산물유통개선사업 **① 축산물도축 · 가공시설설치지원**			
〈사업명〉	①축산물 도축 ·가공시설설치 지원 ②축산물도축 ·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①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해 2개사업을 1개사업으로 통합
5.시행요령 〈사업개요〉 ①도축장시설 현대화			
1) 사업대상자	○통폐합, 기타가축 도축시설을 하고자 하는자 (신 설)	○---------- ---------- ○도매시장 기능설치를 하고자 하는 LPC	○LPC 활성화도모
2) 지원용도	○도축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 설)	○---------- ○도매시장 기능설치를 위한 개보수 자금(LPC에 한함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도축업허가증 등),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등	○법인 정관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도축업허가증 사본 등은 삭제	○불필요한 제출 서류 감소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②도축장시설보완 1)사업대상자	○HACCP지정(적용확인 포함)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등급이상이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05년도 도축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소 6,000두/년 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 이상)인 경우 지원	○위생수준이 높고 경쟁력 있는 도축장에 집중지원
2)지원용도	○HACCP시설보완, 도축·오폐수처리시설, (신 설)	○----------, 부분육 상장을 위한 전자경매 시설 등 지원	○부분육 유통 활성화
③축산물가공업체시설 1)사업대상자 〈우선지원 요건〉	(신 설)	○도축장내에 육가공장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고자 하는 업체 ○2차 육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HACCP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하기 위해 개보수 하고자 하는 업체	○정책목표와 부합한 우선순위 명시
⑥도축장운영자금 1)사업대상자	○도축장 HACCP 운용 수준 평가결과 중위등급 이상 도축장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중위등급 이상이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05년도 도축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소 6,000두/년 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년 이상)인 경우 지원 - 총 지원받는 업체의 도축능력의 합이 '05년도 전국 도축물량 범위내에서 제한하여 지원	○위생수준이 높고 경쟁력 있는 도축장에 집중지원
2)지원조건	(신 설)	○당해연도, 동일업체에 도축장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원료구매자금) 이중 지원신청 불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 지원단가	○LPC - 대규모 50억원이내 - 중규모 30억원이내 ○일반도축장 - 도축물량에 따라 4~12억원이내	○LPC : 50억원이내 ○일반도축장 : 20억원이내	○위생수준과 유통구조 개선, 경영평가에 따라 일부 단가조정
4) 심사 및 지원 대상자 확정	(신 설)	○시·도지사 : 심사 ○농림부장관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위생수준 및 경영현황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지원액 확정
5)지원용도	○LPC : 건설자금 부채상환, 원료구매자금 등 ○일반도축장 : H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 ACCP운용비용, 일반관리비 ○----------, 원료구매자금	○자금용도 추가
①축산물브랜드경영체 지원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 사업통합 -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가축계열화판매시설현대화→축산물브랜드경영체지원
2. 추진방향	○지자체 지방비 부담, 지자체, 농가, 학계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우선지원 (신 설)	○---------- ---------- 광역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경우 회계와 조직 등이 명확히 구분된 사업단 (단위조직체)을 구성·운영할 경우 우선 지원	○책임경영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문 경영체계 도입
5. 시행요령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자부담	○축발기금80%, 자부담20% (단서신설)	○---------- 다만, 출하선급금, 사료 통일용자금 등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은 자부담 면제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경영체 부담 완화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추진체계〉			
마. 지원기준			
1) 브랜드사업부문 ○ 지원한도	○조합 자기자본의 700%이내, 조합이외의 경영체는 50억원 이내	○----------500% 이내 ----------50억원 이내 또는 연간매출액의 20% 범위내	○농협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합과 일반법인간의 형평성 유지
○세부자금용도별 지원 범위	(신 설)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중 가축계열화와 브랜드가맹점판매시설지원, 축산물도축·가공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영체의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로는 지원제외	○정책자금 중복 지원 방지
	-사료통일자금은 사료통일이 되지 않은 회원농가의 사료통일용 자금(외상대금상환)으로 지원하거나 브랜드 경영체의 ○EM사료 공급용 자금으로 지원	-사료통일자금은 사료통일이 되지 않은 회원농가의 사료통일용 자금(외상대금상환 포함)으로 지원하되, 사료통일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 ·다만 경영체 자체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10%이상 인하	사료가격 인하 유도
아. 사업실적 평가	○평가대상기간 : 1.1 ~12.31 평가시기 : 1/4분기	○평가대상기간 : 7.1~6.30 평가시기 : 3/4분기	○사업자금의 지원이 매년 6월이후에 지원되어 평가기간의 조정 필요
○ 평가결과 조치	○평가점수 30점미만 :지원액 20%회수 및 경고 평가점수 35점미만 : 지원액 10%회수 및 경고 평가점수 40점미만: 경고	○------ 40점미만 : ---------- ------ 45점미만 : ---------- ------ 50점미만 : --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자. 사업관리 기준	○자금인정기준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사업운영자금 등 용도별 누계액과 평잔액을 기준으로 자금운용 실적을 파악 · 출하선급금: 차변누계액 · 매취자금 : 차변누계액의10% · 사업운영자금 : 평잔	○사업관리기준 연도별 사업계획·실적, 생산 기반구축 정도, 판매계획·실적, 브랜드항목별 계획·실적, 영세규모농가 참여 비율 등 자금지원시 경영체별 성과지표를 부여하여 관리	○차변누계액, 평잔 등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내용으로 일반경영체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업평가를 자금운용 실적에서 성과지표 실적으로 개선
○출하선급금	○운용금리 : 지원금리+2.0%이내	○지원금리+1.0%이내	○농가 지원금리 인하 - 경영체 자부담 경감으로 농가 지원금리 인하
○농가지원자금금리	(신 설)	○경영비, 사료통일용지원자금 등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출하선급금 운용금리를 준용하되, 지원기간 등은 경영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출하선급금 이외의 농가자금에 대해서는 금리, 지원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함
차.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자금운용액이 기금지원액의 100%인 미만의 경우 및 부당사용시에는 축발기금 연체금리로 위약금 징구	(삭 제)	○사업실적을 자금위주에서 성과관리로 전환 -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시에는 대출금 회수 및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징구 가능 (축발운영규정 제22조)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가축계열화> 5. 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2)대상자선정 (가)신청자격	(추 가)	○계열농가의 70%이상 축산업등록	○등록제참여유도
□ 계열화사업자지정	○자금지원 계획이 확정되거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본 사업추진 요령 시행이전에 지원받은 자는 계열화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간주	(삭 제)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호)에 의해 계열화사업자를 지정토록 함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 지원> 5. 시행요령 가.사업내용			
□ 식육소매시설개선	□ 식육소매시설개선 ○ 사업대상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시행령...	(삭 제)	○사업통합에 따라 브랜드중심으로 지원대상 한정
□ 브랜드가맹점 설치	□ 식육소매시설 및 브랜드가맹점 설치 ○ 사업대상자 - 식육소매시설 : 생산자단체 및 식육판매점(음식점겸업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 브랜드가맹점 : 정부지원의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브랜드사업) 대상자 중 직영 판매장이나...	□ 브랜드가맹점 설치 ○사업대상자 : 정부지원의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브랜드사업)대상자 중 직영 판매장이나...	○사업통합에 따라 브랜드중심으로 지원대상 한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나. 지원조건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 체인점 : 연리 5%, 3년거치 5년상환 ○식육소매유통시설 : 연리 5%, 5.5%(일반),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5%, 3년거치 5년상환	○사업통합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로 지원조건 통일
④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시범사업			
〈사업개요〉			
가.단계별 추진내용			
1 가축식별시스템 구축			
○귀표의 배포와 장착	○한쪽 귀에만 귀표 부착	○양쪽에 귀표를 부착	○철저한 개체관리를 위해 신규 부착분부터 양쪽 귀에 부착
○도축신고	(신 설)	○중간상인 등은 「도축두수 및 귀표 번호통보서」 서식을 작성한 후 도축의뢰	○상인에 의한 출하지 신고누락 방지
〈추진체계〉			
마. 사후확인을 위한 DNA검사시스템	○등급판정소에서 시료 채취	○등급판정소 및 시군 축산담당과에서 시료 채취	○기존 브랜드경영체외에 지역단위 참가에 따라 시군 축산담당과 포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⑤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2)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업체의 지정	○농림부는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공모 ○사업 지원을 원하는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업체지정 신청서(별지서식 3)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신청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전문인력 및 컨설팅 실적 등 컨설팅업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	○---민간축산물 브랜드컨설팅업체를 --- ○---------- 민간 컨설팅업체는---------- ---------- ---------- - 민간컨설팅업체는----- ---------- ---------- ---------- -------- ---------	○우리부가 지정하는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업체를 민간업체로 제한하여 민간 컨설팅업체 육성
41.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 안정			
①가축질병근절대책			
□ 방역본부운영지원	○비정규직(방역요원 도축검사원) 관련 - 지원기준 : 기금 80%, 지방비 20%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기금 70%, 지방비 30%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방비 부담 확대 및 지자체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보조금 교부방식 변경
□ 소부루세라방역 특별포상	-	○부루세라 방역 우수지자체 등 30개소(시 군 27, 한우협회지부 3) 평가 및 포상	- 부루세라 근절 기반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도축검사보조원 운영지원	○기금: 2,022백만원 - 보조원수: 100명 - 지원기준: 기금 80, 지방비 20% -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기금: 2,358백만원 - 보조원수: 130명 - 지원기준: 기금 70, 지방비 30% - 지원형태:자치단체경상보조	- 신규인력(30명) 돼지도축장 배치 - 지자체의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 보조금 교부방식 변경 - 지방비 부담확대
□ SRM 제거 시설·장비 지원	○기금 : 14억원 - 대상 : 도축장 2개소 - 지원기준 : 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기금 : 7억원 - 대상 : 도축장 1개소 - 지원기준 : 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BSE예방대책의 일환으로 '06년 도축장 1개소를 선정, 사업추진
②축산물검사			
□ 축산물검사예산	○예산액 : 3,189백만원 - 검사장비:2,000백만원 - 재료비:863 - 원유검사보조원:164 - 장비유지보수비:162	○예산액 : 3,304백만원 - 검사장비:2,072백만원 - 재료비:894 - 원유검사보조원:170 - 장비유지보수비:168	- 증 115백만원 ※ '05 예산액 대비 3.6%('04년 물가상승률)수준 증액
□ 검사장비 구입내역	○구입 : 42종 73점	○구입 : 47종 101점	- 잔류물질·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소요 증가
③HACCP 컨설팅 지원			
□ HACCP 컨설팅지원		○기금 : 225백만원 - 사업량 : 30개소 - 지원대상 : 돼지사육농가, 식육판매업소 - 지원기준 : 개소당 15백만원 (기금 50, 자부담 50%)	-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전문 컨설팅 비용지원으로 조기 정착 유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④가축방역			
□ 사업량 및 단가변경	○전염성위장염 예방 : 2,000천건 ○유행성설사 예방 : 0천건 ○오제스키병 : 894천건 ○마이코플라즈마 : 3,635천건 ○광견병미끼예방 : 220천건 ○우결핵 : 434천건 ○부루세라(RB) : 350천건 ○소백혈병 : 10천건 ○추백리(평판) : 56.7천건 ○추백리(ELISA) : 6.2천건 ○꿀벌예방 : 1,100천군	○전염성위장염 예방 : 0천건 ○유행성설사 예방 : 1,500천건 ○오제스키병 : 840천건 ○마이코플라즈마 : 3,540천건 ○광견병미끼예방 : 265천건 ○우결핵 : 420천건 ○부루세라(RB) : 500천건 ○소백혈병 : 20천건 ○추백리(평판) : 111천건 ○추백리(ELISA) : 22천건 ○꿀벌예방 : 1,300천군 **※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거 책정**	각 시·도 의견 검토 반영
□ 사업변경	○광우병 검사시설 : 4기 < 신 규 >	○< 사업중단 > ○소부루세라 채혈비 - 100천두, 5,000원/단가 ○BSE검사실(유지·보수) - 13개소, 26,000천원/단가 ○긴급방역기동차량 - 19대, 22,570천원/단가 ○랜더링처리시설 보강 - 4개소, 300,000천원/단가 ○RT-PCR(유전자분석기) - 13개소, 47,520천원/단가 ○시험소 신축 장비 (이전·신설) - 2개소, 495,4900천원/단가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랜더링처리시설보강 : 국비50%, 지방비30, 자담20	각 시도 검사체계 구축완료 광우병 예방 및 소부루세라 등 검진 강화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⑤가축공제			
1. 신청자격 ·절차 ·구비 서류 등	(신설)	○축산업등록대상으로 미등록 농가는 지원 제외	○축산업등록제의 정착을 위해 등록 농가만을 지원
42.학교우유급식사업			
1. 지원대상	○초·중학생	○초·중·고등학생	○국무조정실 학교 급식개선대책에 따라 급식대상 확대
2. 지원조건	○국비75%, 지방비 25%	○국비70%, 지방비 30%	○지방비 부담 확대로 자치단체 참여 확대
3. 급식일	○300일 기준	○250일 기준	○토요휴무학교 증가에 따라 토요일 급식 제외
4. 보고	○월별 학교우유급식실적 보고	<삭제> ※ 분기별 급식실적 보고를 보완하여 대체	○필요성이 적은 보고서 삭제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44. 친환경농업육성			
①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원대상사업	○기술지도, 교육훈련장비는 지원대상에 미포함	○기술지도, 교육훈련장비를 지원대상에 추가	○친환경농업 조기 확산을 위해 기술지도장비를 지원대상에 추가함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농업환경기초조사 자료의 활용	- 매년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시장·군수)	-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시장·군수)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사후관리기간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에 활용토록 기간을 명확히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농업환경변동실태 조사를 실시해야함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해야함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농업환경변동실태 조사를 실시해야함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해야함	○사업추진 4년차 이후부터는 인증신청이 가능하므로 인증기관에서 검사확인
별지제5호 서식 - 친환경농업이행 보고서 서식	- 사업 전년도부터 사업 후 2년차까지 이행상황을 기재	- 사업추진년도부터 10년간 이행상황을 기재	○사후관리기간 10년에 맞게 변경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②원예작물천적해충 방제			
○지원대상작목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	○지원대상작물 확대
○지원단가	○7백만원/ha - 딸기 6백만원, 토마토·파프리카·고추 7백만원/ha	○7백만원/ha - 딸기 6백만원, 토마토·파프리카·고추·오이·메론·포도 7백만원/ha	○지원대상작물 확대에 따른 조정
○농가별 지원한도	○한도없음	○지원한도 신설 -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5년차까지 지원하되, 신규사업 신청자 우선지원	○지원대상자 및 천적활용 확대
○신청자격(농가)	○지원대상작물 1,000평 이상. 단, 집단화된 원예단지는 1,000평 미만 가능	○지원대상 작물은 1,0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천적사용 경험 또는 천적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사업부실화 방지를 위해 최소 교육이수 요건 부여
별지제5호 서식 -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 신고서 서식에 천적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없음	○신고서 서식에 천적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을 신설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식 보완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45.농업종합자금지원			
4. 2006년도 지원계획	○2005 사업비 (계) 751,100백만원 - 국고융자 150,220 - 대출기관융자 600,880	○2006 사업비 (계) 876,100백만원 - 국고융자 175,220 - 대출기관융자 700,880	○'06년 예산 반영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해당분야의 사업계획 서와 ····(중략)····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또는 후계농업 인으로 선정된 자, 객토희망농가, 1년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농촌가공 사업자 및 농기계 생산업자, 종자산업법 제 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중략)····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또는 후계농업 인으로 선정된 자,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농촌가공 사업자, 농기계 생산 업자 및 농기계보관 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06년 종합자금으로 추가편입된 사업
5.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계속)	※ '05년도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특례 시행 지침에 따라 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한 '06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 <실무협의회> 주)	○적격사업자 선정 및 관련규정 명확화
	* 농촌가공산업은 농업 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협동조합), ··(중략)·· 선정된 경영체에 지원	* 농촌가공산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중략)····· 선정된 경영체에 지원	○중소가공업체 지원 강화
	* 지원제외 <신설>	* 지원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중복 지원방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계속) * 지원제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 지원액 포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 지원액 포함)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종합자금 개선 사항 반영
	- 배우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등록(제재) 중 인 경우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 관리대상자 등록(제재) 중인 경우	○ 제도변경에 따른 용어수정
2) 지원조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 산업육성, 시설 농업기자재 생산지원,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 산업육성,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	○ 자금종류별 지원 분야를 구분 명확화
	< 신설 >	④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 시켜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 (부지구입비는 제외)	○ '06년도 종합자금으로 추가편입된 사업반영
○ 지원조건	*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 지원, 농촌가공 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3년거치 10년균분상환(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 지원,농기계보관창고지원 사업, 농촌가공 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지원조건을 종합자금지원체제로 일원화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중략)· 고품질우량 종자개발사업 시설지원 등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중략)· 고품질우량 종자개발사업 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지원 등	
	- 운영자금 < 신설 >	- 운영자금 * 농촌가공사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3억원 까지 지원하되,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시 추가대출가능 (추가대출금의 대환은 불가)	○ 예산범위내에서 많은 업체 지원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2)지원조건 (계속) ○자금용도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관광농원사업, 농촌가공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토지매입자금 제한사항 명확화
	- 개보수자금 * 번식용 한우암소(한우, 암송아지, 육성우만 해당)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	- 개보수자금 <삭 제>	○축산국 소값안정대책에 따라 소 입식자금지원중단
다. 자금지원 결정 3)심사방법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 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신용평가표 공개포 함)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 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종합자금 개선사항(신용평가의 객관성 제고)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종합자금 1억원이상(금차지원금 포함)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가자금 지원 중단	○종합자금 3억원이상(금차지원금 포함)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가자금 지원 중단	○종합자금 개선사항 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6. 세부사업 내용 (계속) <원예·특작분야>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농산물 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만, 700평이하 자동화 비닐 온실의 공사감리는 본 지침 적용을 배제함.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농산물 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만, 700평이하 자동화 비닐 온실은 별도지침 적용을 배제함.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축산, 특작등시설 설치와의 형평성 유지 - 농가의 추가비용(설계비, 감리비) 절감
6. 세부사업 내용 <축산분야>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신설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단,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 돼지는 가축사육시설 50㎡ 이상 보유농가. 소,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보유농가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명시 및 지원근거 명확화

주1」

< 실무협의회 >

o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실무 협의

o 구성 : 10명 이내(농협 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o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대출기관의 사전신용조사(별첨),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과 합치여부 등 검토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49. 후계농업경영인육성			
①창업농지원사업			
1. 지원단가	○2천만원 ~1억 2천만원까지 차등지원	○2천만원 ~1억 2천만원까지 차등지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농업인턴제 10개월이상 참여자,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신규인력 유입사업 참여자 및 한농전 졸업생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한 젊은 인력 유입 강화 필요
2. 융자금리 인하	○연 4%	○연3%	○신규인력 유입 촉진
3. 선정실무위원회	<신설>	○시·군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적격사업자 선정
4. 부부 창업농 지원	○부부가 모두 후계농 신청시 원칙적으로 1인만 지원	○사업계획 등의 평가점수가 높으면 선정	○우수한 여성농업인 육성
5. 평가기준	<신설>	○인턴제,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 농과대 트랙제, 농고 현장체험 교육 이수시 교육훈련기간 인정 또는 가점 부여	○인력유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6. 농지구입 지원단가	○평당 논 30천원, 밭 35천원까지 지원	○평당 논 40천원, 밭 56천원까지 지원	○최근의 농지가격 상승 현황 고려
7. 07년 사업신청자	<신설>	○당해년도에 창업농 대상 공통교육 이수하여야 함	○선교육 후선정을 통한 적격 사업자 선정
8. 한우 구입자금 지원 잠정 중단	<신설>	○한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1.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 컨설팅업체 인증·절차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시·도에 등록 후 사업 실시	○중앙에서 능력있는 컨설팅 업체를공모·인증 - 컨설팅업체 인증 pㅇㅇ체 도입	- 우수 컨설팅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컨설팅의 질 향상 도모
2. 컨설팅 대상 및 배정기준	○분야별 컨설팅 - 재무회계(필수)+선택 분야	○종합컨설팅 실시 - 경영, 마케팅, 브랜드 등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와 상호협의 추진
	○농가신청에 의한 배정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도별 자체계획 수립·추진 - 단일품목에 50%이상 배정 되지 않도록 상한선 설정	- 대상농가의 선정기준 강화를 통해 내실화 유도
3. 농가선정 기준 절차	○우선 순위에 따라 형식적 선정 - 시·군 농발위에서 선정	○컨설팅 신청내용 중심으로 필요성 심사(전문가) - 대상농가 기준 상향조정 - 공동마케팅, 브랜드, 전문조직 등 법인으로 전환	-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제도화
4. 사후관리	○농촌지도조직과 경쟁 관계	○지도와 컨설팅의 연계 - 지자체 및 농민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점검 실시 -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 컨설팅 전문화 촉진 및 상시 관리체계 유지
5. 기타사항		○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 *'06신규 : 지역클러스터, 농촌관광, 친환경농업분야 - 지원기준 마련 등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컨설팅 비용 표준 메뉴얼을 마련하여 컨설팅 질 향상 도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3.농업직접지불제 **①경영이양직불사업** <사업개요>			○ 연도변경으로 연령 기간 조정
(1)경영이양보조금지급 대상자 (가)연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72세 이하인 자 (2005년도의 경우 1933년 1월 1일 ~ 194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70~72세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 (2006년도의 경우 1934년 1월 1일 ~ 194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라)지급요건의 예외 (제외)	○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민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분가가 아닌 임의분가를 통해 부모의 답을 경영이양을 받는 경우 포함	○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 세대를 분리한 장·차남에게 경영이양을 할 수 있게함
(2)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 답	○ 공사에 임대이양중인 당해 답을 경작하고 있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 농업기반공사에 임대이양중인 당해 답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 양수대상자 확대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체계> 마. (1)지급약정 체결	<신설>	(라)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단가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단가변동시 분할 지급자의 지급단가 명확화

<table>
<tr><th>구 분</th><th>현 행(2005)</th><th>변경안(2006)</th><th>변경사유</th></tr>
<tr><td>(2)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td><td>○지급기간
※ 70~72세는 농지매도 및 임대시 보조금 1회 지급

○경영이양보조금 연령별 지급기간
<table><tr><td>63세</td><td>8년</td></tr><tr><td>64세</td><td>7년</td></tr><tr><td>65세</td><td>6년</td></tr><tr><td>66세</td><td>5년</td></tr><tr><td>67세</td><td>4년</td></tr><tr><td>68세</td><td>3년</td></tr><tr><td>69세</td><td>2년</td></tr></table></td><td>○지급기간
※ 70~72세는 농지매도 및 임대시 임대이양 보조금 단가를 적용하여 1회 지급
○경영이양보조금 연령별 지급기간
<table><tr><td>63세</td><td>8년</td></tr><tr><td>64세</td><td>7년</td></tr><tr><td>65세</td><td>6년</td></tr><tr><td>66세</td><td>5년</td></tr><tr><td>67세</td><td>4년</td></tr><tr><td>68세</td><td>3년</td></tr><tr><td>69세</td><td>2년</td></tr><tr><td>70~72세</td><td>1회(일시불)</td></tr></table></td><td>○70~72세 보조금 지급기준 명시

○70세이상 지급 기간 설정</td></tr>
<tr><td><행정사항>
가. 사업시행</td><td><신설></td><td>(3) 경영이양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공사는 경영이양 농지를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통보 (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 면적), 소유자·경작자 변동사항 등</td><td>○경영이양한 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여부 확인용으로 제공</td></tr>
<tr><td>53. 농업직접지불
①경영이양직접지불
2. 시책추진 방향
1663쪽</td><td>○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td><td>○----------
----

-------추진</td><td>○중복표현으로 자구수정(목적에 필요성 명시)</td></tr>
</table>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4. 연도별 지원 계획 1663쪽	(단위 :ha, 백만원) 구 분 / '97-'03 / '04 / '05 / '06이후 / 계 사업량 / 33,311 / 5,254 / 8,278 / 46,200 / 93,043 사업비 계 / 90,586 / 14,100 / 28,604 / 314,800 / 448,090 사업비 보조비 / 89,136 / 13,628 / 27,654 / 305,356 / 435,774 사업비 사업관리비 / 1,450 / 472 / 950 / 9,444 / 12,316 ※ 2005년 이후 사업량 및 지급단가는 2005년도 기준적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 '97-'04 / '05 / '06 / '07이후 / 계 사업량 / 38,099 / 8,278 / 4,818 / 56,014 / 107,209 사업비 계 / 104,666 / 28,604 / 17,491 / 417,652 / 568,413 사업비 보조비 / 102,763 / 27,654 / 16,452 / 373,205 / 520,074 사업비 운영비 / 1,903 / 950 / 1,039 / 44,447 / 48,339 ※ 2006년 이후 사업량 및 지급단가는 2006년도기준적용	○2006년도 예산 반영
<사업개요> (1)경영이양 보조금지급 대상자 (가)연령 1664쪽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72세 이하인 자(2005년도의 경우 1933년 1월 1일 ~ 194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70~72세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2006년도의 경우 1934년 1월 1일~ 194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연도변경으로 연령기간 조정
(다)지급요건 1665쪽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지급액 상한, ----------	○용어통일
(라)지급요건의 예외 (제외) 1666쪽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분가가 아닌 임의분가를 통해 부모의 답을 경영이양을 받는 경우 포함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세대를 분리한 장·차남에게 경영이양을 할 수 있게함
(2)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 답 1666쪽	○공사에 임대이양중인 당해 답을 경작하고 있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농업기반공사에 임대이양중인 당해 답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약정을 해지한 답.	○양수대상자 확대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table>
<tr><th>구 분</th><th>현 행(2005)</th><th>변경안(2006)</th><th>변경사유</th></tr>
<tr><td>(5)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방법
1667쪽</td><td>(5)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매매에 의한 경영이양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령에 따라 (63세 8년 ~69세 2년)매월 분할지급
○임대에 의한 경영이양
- 약정체결 후 1회 지급
* 70~72세는 농지매도 및 임대시 보조금을 1회지급</td><td><삭제></td><td>○1673쪽과 중복 표현으로 삭제</td></tr>
<tr><td>나. 2006년도 사업비내용
1667쪽</td><td>(단위 : ha, 백만원)<table><tr><th rowspan="2">사업량</th><th colspan="3">사 업 비</th></tr><tr><th>합계</th><th>보조금</th><th>사업관리비</th></tr><tr><td>8,278</td><td>28,604</td><td>27,654</td><td>950</td></tr></table></td><td>(단위 : ha, 백만원<table><tr><th rowspan="2">사업량</th><th colspan="3">사 업 비</th></tr><tr><th>합계</th><th>사업비</th><th>사업운영비</th></tr><tr><td>4,818</td><td>17,491</td><td>16,452</td><td>1,039</td></tr></table></td><td>○'06예산 반영</td></tr>
<tr><td><사업추진체계>
나. 사업담당 부서
1667쪽</td><td>(1)중앙
○농업기반공사 농지사업처 (전화 : 031 - 420 - 4141, 3145)
(2)시・도
○농업기반공사 각도본부 농지사업부</td><td>(1)중앙
○농업기반공사 농지은행사업본부 (전화:031-420 3372, 3375)
(2)시・도
○농업기반공사 각도본부 농지사업팀</td><td>○부서명칭 변경으로 자구수정</td></tr>
<tr><td>마.(1)지급약정 체결
1672쪽</td><td><신설></td><td>(라)경영이양보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단가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td><td>○단가변동시 분할지급자의 지급단가 명확화</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현 행(2005)</th><th>변경안(2006)</th><th>변경사유</th></tr>
<tr><td>(2)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1673쪽</td><td>○지급기간
※70~72세는 농지매도 및 임대시 보조금 1회 지급

○경영이양보조금 연령별 지급기간
<table><tr><td>63세</td><td>8년</td></tr><tr><td>64세</td><td>7년</td></tr><tr><td>65세</td><td>6년</td></tr><tr><td>66세</td><td>5년</td></tr><tr><td>67세</td><td>4년</td></tr><tr><td>68세</td><td>3년</td></tr><tr><td>69세</td><td>2년</td></tr></table></td><td>○지급기간
※70~72세는 농지매도 및 임대시 임대이양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1회 지급

○경영이양보조금 연령별 지급기간
<table><tr><td>63세</td><td>8년</td></tr><tr><td>64세</td><td>7년</td></tr><tr><td>65세</td><td>6년</td></tr><tr><td>66세</td><td>5년</td></tr><tr><td>67세</td><td>4년</td></tr><tr><td>68세</td><td>3년</td></tr><tr><td>69세</td><td>2년</td></tr><tr><td>70~72세</td><td>1회(일시불)</td></tr></table></td><td>○70~72세 보조금 지급 기준 명시

○70세이상지급 기간설정</td></tr>
<tr><td><행정사항>
가. 사업시행
1675쪽</td><td><신설></td><td>(3) 경영이양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공사는 경영이양 농지를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읍 면 동)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통보.(3/4분기 실적은 8.25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통보)
-통보사항 : 농지사항(지번, 면적, 소유자·경작자 변동사항 등</td><td>○경영이양한 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여부 확인용으로 제공</td></tr>
<tr><td>나. 사후관리
(1)수혜자관리
1675쪽</td><td>-추곡약정수매현황 또는 논농업 직불약정 현황</td><td>-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약정현황</td><td>○관련법령 개정으로 자구수정</td></tr>
<tr><td>다.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 보조
1678쪽</td><td>○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사후관리 등 사업대행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은 2005년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할 수 있음</td><td>○----------
----

2006년----------

-------</td><td>○연도 변경</td></tr>
</table>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3.농업직접지불제 **②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예산편성체제	○논·밭 분리편성 - 논 : 논농업직접지불 - 밭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논·밭 통합편성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에 따른 예산 통합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 직불금단가 (천원/ha)	○논 - 저농약 (미지급 - 무농약 150 - 유기·전환기유기 270	○논 - 저농약 217 - 무농약 307 - 유기·전환기유기 392	○논단가 인상
- 직불금 신청 및 지급방법(지목)	○공부상 지목 기준 신청, 지급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지급	○지목별 지급기준 구분을 명확히함
- 직불금 지급제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형태는 포함	○ 원목재배형태의 버섯재배를 토양이용 영농형태에 포함
53.농업직접직불제 **⑤친환경축산직불제**			
1. 인센티브프로그램 지급요건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로 환경개선(200만원 한도)	○조경수 식재비용 지원금액 조정 (100만원 한도) ○축사주변 악취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비용 지원(50%, 100만원 한도)	- 친환경축산직불 참여농가중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 확대
2. 직불금 지급시기 조정	○친환경축산직불 이행상황 점검후 11-12월중 지급	○친환경축산직불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상반기(5-6월 및 하반기(11-12월) 지급	- 직불금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참여농가의 참여의식 고취
3. 친환경축산직불농가 이행점검표 (별지 제12호)	**(신 설)**	○친환경축산직불농가 이행점검표 서식에 의거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신설	-점검기관의 이행점검서식 통일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4. 농업인재해공제			
1. 사업분류			
2. 신청자격 절차 구비서류			
3. 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	○ 농업인	○ 상시 직장보유자 지원 제한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55.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1. 사업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추가경감고지, 홍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어업인 지원대상자 파악 추가	○ 직역변동사항, - 용도지역 주소지 등 확인 필요
2. 일제조사	○ 조사실시	○ 일제조사 생략	○ '05.전수조사 실시(11월)
3. 농어업인 경감대상 해제신고	○ 농어업인 신고	○ 삭제	○ 실효성없는 행정규제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6.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3 농어촌민박사업 <사업개요> ○사업규모	○객실 7실 이하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제도 개선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시행('05.11.5)
○시설기준	○관련규정 없음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1조 이상씩 비치	
<추진체계>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신설	○관련규정 없음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야 함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제도 개선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시행('05.11.5)
<행정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련규정 없음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제도 개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시행('05.11.5)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나. 사업자 사후관리	○관련규정 없음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에는 관련 내용을 인·허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도 통보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제도 개선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시행('05.11.5)
라. 기타사항	○관련규정 없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 등 마련(별지1-8서식)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58. 농가경영안정지원 ①농·축산경영자금 지원			
7.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대출제한 대상	-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단순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가능하며, 특수채권보증채무자로등록된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 ---------- ---------- ---------- --------,특수채권보증채무자로 등록된자는 **대환·연기는 가능하나 신규대출은 불가**	○기존대출금 제한 기준 완화 (기시행)
	- 농업종합자금 중 영자금을 지원 받은 자 < 신 설 >	- ---------- -- ---------- -- **단,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 대출당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합리적인 경영비 지원 (기시행)
	< 신 설 >	- **신규진입농에 대하여는 농지원부(또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지원대상 자격심사 강화 (기시행)
	< 신 설 >	- **대출 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지원 불가**	○합목적적인자금운용 (기시행)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61. 영림계획			
○ 지원단가	○8,102원	○10,189원	○수요자 요구반영
○ 작성자	○영림기술자 ○독림가·임업후계자는 자기 소유산림에 한하여 작성 가능		
	(추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06.8.5) 이후 모든 산림소유자는 자기 소유산림에 한하여 작성 가능	○산주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영림계획 작성
3. 사방사업			
○ 사업의 종류	**(신 설)**	○ 해안방재림 조성	○신규사업 반영
○ 사업 시행	(3) 다만, 산불취수용 다목적댐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댐 설계·시공경력이 있는 업체에서 시행원칙	**(삭 제)**	○예산 미반영
4. 산불진화 진입 도로 개설	**(신 설)**	4.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신규사업 반영
○ 예정지선정	**(신 설)**	○주기능이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로이므로 산불진화·산림경영 등 다원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산림을 우선적으로 선정	○신규사업 반영
○ 지원비율	**(신 설)**	- 국고보조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신규사업 반영
	5. 목재이용·가공 지원	**(삭 제)**	8. 산림사업종합 자금에 통합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64.임산소득증대 ①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밤 생산장비 - 사업내용	(추 가)	- 선별기, 예취기 등	○수요자 요구반영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추 가)	- 사업단지내 작업로 ,모노레일 등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가능	○수요자 요구반영
- 지원단가	- 송이산 가꾸기 기반시설 : 3,295천원/ha	- 송이산 가꾸기 등 기반시설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수요자 요구반영
- '07년 신청자격	- 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 :개인 또는 법인경영체	- 산머루·산약초·산채·오갈피 재배 등 임산물 생산단지 : 1개 단지 규모가 1만평이상으로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단지화·규모화를 위해 신청자격 강화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별 우선순위	-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 규정	- 유사사업별로 통합하여 우선순위 규정 ·친환경임산물 재배자 ·전업농 ·주산단지내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자	○ 지침 간소화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② 조경수·분재생산			
○ 관상수 생산 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 한국조경수협회, 한국분재조합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자치구 - 민간자본보조 : 한국조경수협회, 한국분재조합	○수요자 요구반영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50%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민간자본보조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수요자 요구반영
○ 조경수 관정 시설			
- 지원대상자 선정	- 한국조경수협회	- 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자치구 - 민간자본보조 : 한국조경수협회	○수요자 요구반영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30%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민간자본보조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수요자 요구반영
	④산림소득종합자금	**(삭 제)**	8. 산림사업종합자금에 통합
④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신 설)**	④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	**(신 설)**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 및 주민 또는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신규사업 반영
○ 지원비율	**(신 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신규사업 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사업종류	(신 설)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도생산기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 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신규사업 반영
○ 사업 우선순위	(신 설)	○기타 농림업 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등) ○백두대간 지역의 마을 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사업 ○해당 지자체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공 사업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신규사업 반영
65. 산림조합 육성			
○ 사업종류	○산림조합 육성자금	(삭 제)	8. 산림사업종합 자금에 통합
66. 임산물 유통 개선 지원			
①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 임산물생산자 판매장	(신 설)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수액 전시 ·판매 유통센터	(신 설)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 한국수액협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떫은 감 가공 ·유통 시설	(신 설)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 떫은 감 생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진안 임산물 유통 센터	(신 설)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 진안군 산림조합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밤 저장 및 박피기 지원	(신 설)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 밤 가공업체 또는 법인 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저온 유통차량지원	(신 설)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산채 ·버섯류 가공 물류센터	(신 설)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임산물 표준출하 - 임산물 포장 자재비 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한하여 포장자재비 일부 지원	○수요자 요구반영
○ 추진체계	○세부사업별로 추진체계, 시행절차 등을 규정	○유사 사업별로 통합하여 추진체계, 시행절차 등을 규정	○지침 간소화
67.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신 설)**	8.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융자사업 통합
○ 지원대상자	**(신 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법인경영체	○신규사업 반영
○ 자금의 종류	**(신 설)**	○자원조성관리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육성 -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의 국내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야매입, 자연휴양림조성, 기타 임업경영자금 ○산림소득 및 산업육성 - 단기산림소득자금, 수목원조성, 조림용묘목생산, 임업기계화,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터 원료구입, 수출원자재 구매 ○해외산림투자 - 해외조림, 해외육림 ○산림조합육성 - 단기사업자금, 장기사업자금	○신규사업 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지원방법	**(신 설)**	○대출금은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종합자금내 세부사업간 탄력적 지원 ○ 사업대상자 교체 -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사업 미추진시 차순위자로 직권 교체	○신규사업 반영
○ 자금지원	**(신 설)**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사업수행능력 , 사업타당성 분석과 현장실사를 통해 자금 지원 결정 ※ 융자신청 순위에 따라 사업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신규사업 반영
○ 지원조건	○사업별 3.0~5.5%금리적용	○사업별 1.5~4.0% 금리적용 - 농업인 3%, 비농업인 4%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 장기투자사업인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야매입 , 해외산림투자는 1.5% 적용	○금리인하
	8.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	**(삭 제)**	8. 산림사업종합자금에 통합
69. 해외조림투자지원	11. 해외산림투자지원	10. 해외조림투자지원	○단위사업 명칭 변경
○ 사업 종류	○ 해외조림 및 육림	**(삭 제)**	8. 산림사업종합자금에 통합
○ 지원대상자	**(신 설)**	○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한 자로서 신규조림지를 확보하여 해외조림을 실시한 자	○신규사업 반영
○ 자금지원	**(신 설)**	○지원내용 - 해외조림을 위하여 진출대상국의 선정, 임지의 확보, 계약체결, 식재 수종 선정 등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규모 - 신규조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ha당 25천원)	○신규사업 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70.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 사업 시행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융자사업 시행요령 규정	**(삭 제)**	8. 산림사업종합자금에 통합
71.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	**(신 설)**	12.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	○신규사업
○ 대상사업	**(신 설)**	○산림경영 모델 숲, 경제림 육성단지 등 산림자원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소득·가공·유통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
○ 지원대상자	**(신 설)**	○산림·산촌 클러스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 반영
○ 지원비율	**(신 설)**	○산림산촌클러스터(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시범사업(1개소) : 실시설계에 의거 사업별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신규사업 반영
○ 사업시행	**(신 설)**	○시·도 공모를 통하여 산림·산촌클러스터심의회 (15명 내외)에서 선정기준 (지역주민의 열정, 자연적 여건, 지자체의 열의)에 따라 선정→기본설계 실시→산림청 예산심의회 심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연도별 투자계획 확정)→예산요구후 '07년 실시 설계후 사업시행	○신규사업 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 밭기반정비 <사업대상선정기준>			
	○ '01~'02년 기간중 조사한 대상지 중에서 선정	○기조사한 대상지중 30㏊ 이상(경사도 15이하 지구 우선선정	○대상지 선정기준 구체화
2. 농지기반조성 ① 경지정리사업 <추진체계> 라. 사업 시행 (5)세부설계 실시	○ 세부설계후 신규지구 선정	○사업착수 예정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 실시	○시행단계축소(3→2단계) (현행)조사→설계→착공 (개선)조사→설계·착공
(13) 예산의 지원	○기본조사비는 기준 요율 범위내에서 확보된 예산을 지원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요율범위 내에서 지원	○자구 수정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3. 배수개선 <사업계획수립시행>			
라. 기본조사실시와 기본계획수립	(10)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 부족액 발생시 착수후 사업비에서 집행가능	(10)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요율범위 내에서 집행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마.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1)농림부장관이 세부설계 지구 선정	(1)시·도지사가 세부설계지구 선정 예산 확보 후 세부설계 시행	○균특취지에 맞게 조정 ○사업착수후 설계비 지원방식 개선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0.농산물 물류표화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나. 대상사업	○지원대상장비 -'05년 인증대상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냉동·냉장차량, 컨테이너 등.	○지원대상장비 -'05년 인증**완료**장비 -'05년 「물류표준설비인증」 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냉동·냉장차량, 컨테이너,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05년 「물류표준설비인증」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인증품 추가
마. 세부 사업별 사업단가	○사업단가는 농림사업 통합시스템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	○사업단가는 농림사업 통합시스템에 의한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물류설비의 가격변동 요인이 수시로 있음 ○부가가치세 제외 사항을 명확히 함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라. 대상자선정	○ 선정절차 -농림부에서는 최종사업계획을 승인, 시 도지사에 통보	○ 선정절차 - **삭제**	○균특회계의 특성상 시도 및 시군이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 -농림사업통합 시스템으로 자동처리 보고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라. 대상자선정	○선정절차 - 농림부에서는 최종사업계획을 승인, 시 도지사에 통보	○ 선정절차 - **삭제**	○균특회계의 특성상 시도 및 시군이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 - 시스템상으로 자동처리 보고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사업계획 변경 - 농림부에서는 최종사업계획을 승인, 시 도지사에 통보	○사업계획 변경 - **삭제**	○균특회계의 특성상 시도 및 시군이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 - 농림사업통합시스템으로 자동처리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사업변경으로 인한 장비의 매각 등 - 규정 없음	○사업변경으로 인한 장비의 매각 등 - **사업지원대상자는 사업이 변경 되어 지원 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요함** - **승인을 얻어 매각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후 잔여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사업변경으로 인한 시설·장비의 감가상각 기준명시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 별지[별지5호서식 3]의 경영장부 작성 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1. 시책 및 추진방향	<신설>	○「APC지원 3원칙」 ①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②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③지자체 차원의 APC사업 관리 강화	○산지유통센터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APC지원 3원칙」 명시
2. 사업비 표준단가(예시)	○건물(350평, 554백만원) - 집하선별포장장 : 200평 ×1백만원 = 200백만원 - 예냉고 : 120평 ×3.2백만원 = 384백만원 - 저온저장고 : 120 평×2.7 백만원 = 324백만원 - 사무실, 기타시설물 : 30평 ×1백만원 = 30백만원 ○기계류(선별기,결속기,봉함기,제함기,컨베어 등 : 80백만원 ○장비류(120백만원) - 마늘박피기 및 선별시설 - 냉장탑차(1대) : 50백만원 - 파렛트(480개) : 12백만원 - 운반상자(4,800개) : 11백만원 - 지게차(1대) : 22백만원 - 수송차량(1대) : 25백만원 ○에틸렌가스제거기, 총 사업비 1%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등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포장장·사무실·회의실·일반창고·기타시설 등(1.0백만원), 차압식예냉고(3.5백만원), 저온저장고(2.7백만원), 품질검사실(2.0백만원) ○선별·포장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어, 마늘박피기, 세척시설 등 ○유통시설장비류 : 수송차량(화물용),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에틸렌가스제거기 등 ○전체사업비 2%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개별시설에서 시설부류별로 기준단가를 제시하고, 거점APC 등 유사시설 지원단가로 기준 통일 - 특정 면적에 대한 사업비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지역별·품목별·운영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토록 함. - 선별·포장·유통시설 장비류는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원단가 기준 적용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 세부시설 기준	<신설>	○산업자원부 물류표준설비 인증 제품 우선지원 고시 제2004-074호/'04.7.9)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
4. 지원대상 선정기준 (우선순위)	<신설>	○지자체형 운영주체는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 전문조직, 그 외 시장·군수가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함. - 유휴 또는 부진사업장의 유통시설을 인수한 공동마케팅 조직 및 전문조직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기타 신청조직은 전문기관의 사업성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지자체형의 경우 운영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우수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최소한의 기준 제시 ○균특회계 전환 이후 지자체의 사업성 검토가 미흡하거나 소액·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우수조직 중심으로 집중지원
5. 사업추진 절차 및 요령	○시·도 주관으로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 실시 *전문기관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성 진단보다는 대부분 사업신청자 심사표 등 지침 6호 양식에 의한 간이 심사 등의 형식적인 평가 실시	○사전 부실예방 및 우수조직 집중지원을 위해 사업성 진단은 반드시 전문기관(유통공사, 회계법인, 전문컨설팅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규정 - 사업성 진단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신청자 또는 지자체가 부담 -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산 검토단계에서 미반영 의견 제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설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진단 실시 - 균특회계 전환에 따른 혼선과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지원 예방 - 사업신청자 책임 강화를 위해 진단 비용은 자부담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	○시설관리 기준 마련 *시설관리지침(안) 의견조회중
6. 사업시행	○사업계획 변경 -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 사업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 중요사항 : 시·도지사	○시·도지사로 하여금 잦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을 최소한으로 억제 - 총 사업비의 20% 초과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현저히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불가토록 하는 근거 마련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심도있는 사업성 진단 등을 강화하여 잦은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요소 최소화 가능
7.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신설>	○평가대상 : 농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이 6개월 이상있는 경우에 한함 ○평가기간 : 매년 1~6월 ○평가 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농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평가기준 제시
8. 우수조직 및 부진조직 경영컨설팅지원	<신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경영 인력과)으로 정부지원 APC 컨설팅 지원 - 평가결과 상위 25%이상 조직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부진조직(하위 5%이하)은 「경영클리닉지원」 실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평가결과 환류 및 효율성 제고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 목재이용가공 지원	3.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4.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지원	3. 목재이용가공지원 ①목재제품 야외전시장 ②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 단위사업 통합
①목재제품 야외전시장			
○ 보고	**(추 가)**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
4. 자연휴양림 조성	5. 산림휴양공간조성	4. 자연휴양림 조성	○단위사업 명칭 변경
6.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7. 수목원 조성 8. 산림박물관 조성	6.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단위사업 통합
9. 야생화타운 조성	**(신 설)**	9. 야생화타운 조성	○신규사업 반영
○ 사업내용	**(신 설)**	○지리산 축소모형으로 성토·조성하여 지리산 식생 수목 및 야생화 식재	○신규사업 반영
○ 지원조건	**(신 설)**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신규사업 반영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17. 농어촌생활환경정비 ②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정주권 면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 등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 ○면지역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중심지와 배후마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 <면정주기반확충사업> 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위주로 추진(nati○nal - minimum)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 면소재지 권역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소득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하여 면 중심지 역할 제고	○정주권 면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 등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 <삭제> ○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위주로추진(nati○nal - minimum) <삭제>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은 예산이 미확보되어 지침에서 삭제
나. 장기사업목표	○면정주기반확충사업('90~'13) :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770개면(15자치구포함)	○면정주기반확충사업('90~'13) :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800개면(15자치구포함) -1단계 : '90 ~'04 까지770개면(15개자치구 포함) -2단계 : '05 ~'13 까지800개면(15개자치구 포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전국 1,209개면과 준농촌 지역 15개 자치구 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면 361개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면 53개면, 무인 읍면 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800개면(15개자치구 포함 읍 대상으로 추진	
	○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06~'13) :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250개 주요 거점면 육성	<삭제>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면개발계획수립	<신설>	(1)목적 (2)면개발계획수립 대상 (3)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4)면개발계획 대상면 선정 (5)중심마을생활권 설정 (6)계획수립절차 (7)계획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8)개발계획 수립 소요기간 : 1년 이내로 함 (9)개발계획의 내용 (10)개발계획의 변경 (11)개발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12)개발계획 수립의 효과	오지면에서 해제되어 정주권개발대상면으로 편입된 면(137개면)에 대하여 면개발계획 수립 및 절차를 규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나. 정주기반확충사업 (2) 지원조건	○지원조건 - 보조사업 : 국고 100%(균특회계) - 융자사업 :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원,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조건 - 보조사업 : 국고 100%(균특회계) - 융자사업 : · 주택신축(개축) : 호당 3천만원 이내, 연리 4.0%,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10백만원 이내,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06예산안에 맞춰 금리인하 및 융자상한액 인상 반영
<사업계획수립> (1) 대상사업선정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면으로 보아 지원 (30억원 범위 계획)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다음 연도부터 지원 중단	면지역에 집중지원을 위해 읍승격된 지역은 제외
③전원마을조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마을정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주거단지 또는 영농체험이 가능한 농장을 조성 <신설>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도시은퇴자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마을정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마을 조성 - 취락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있는 농어촌마을 - 기존의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마을	전원마을조성 추진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 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농림업 관련 소득시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을 - 소도읍 및 중소 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의료, 문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 - 농림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간에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나. 개발형태에 따른 사업유형	○은퇴농장 · 주택임대형 은퇴농장, 고령친화 농업형 은퇴농장, 종합복지형 은퇴농장 등	○은퇴농장 · 임대형, 분양형, 종합복지형 등	은퇴농장 유형 사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
5. 2006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시행의원칙> (1) 주거단지 조성 및 주택 건축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와 은퇴농장의 세대당 필지(대지)면적은 200㎡(60평) 이상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전원공간을 확보	○주거단지의 세대별 주택지는 쾌적한 전원공간 조성을 위하여 충분히 확보 -맞춤형전원주거단지, 은퇴농장, 기존마을재개발: 100~300평(330~990㎡)/호 -체재형주말농원 : 50평(165㎡)/호 내외	각 사업유형별 주택용지 필지별 면적을 명확히 규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3) 융자금의 지원	○주택신축자금은 호당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5%, 5년 거치 15년상환	○주택신축자금은 호당 3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상환	'06예산안에 맞추어 융자조건 변경
나. 지원조건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1)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융자 : 4~10억(주택건축비)	○융자 :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06예산안에 맞추어 융자조건 변경
	체재형 주말농원 ○융자 : 4억원수준 (주택건축비)	체재형 주말농원 ○융자 :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06예산안에 맞추어 융자조건 변경
2) 은퇴농장	은퇴농장 ○ 보조 - 주택임대형 : 20~29호 규모로 지구당 3년간 10억원 이내 - 실버농업형 : 30~49호 규모로 지구당 3년간 15억원 이내 - 종합복지형 : 50호 이상 규모로 지구당 3년간 20억원 이내	은퇴농장 ○보조 : 지구당 3년간 10~20억원 범위에서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20~29호 : 10억원, 30~49호 : 20억원, 50호이상 : 30억원	단지규모에 차등지원 토록 조정
	○융자 - 주택임대형 : 4억원 수준 (주택건축비) - 실버농업형 : 10억원 수준 (주택건축비) - 종합복지형 : 20~30억원 수준(주택 건축비)	○융자 : 주택건축비 3,000만원/호 이내	'06예산안에 맞추어 융자조건 변경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사업계획수립> 가.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농어촌정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면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되,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 3조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중 면지역 농어촌 노인복지단지와 연계한 은퇴농장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중 농촌동을 포함 올 대상으로 함 ○예정지역이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으로서 전원마을조성 사업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대상지선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추가
	<신설>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신설>	○마을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가 저렴하고 용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	
(2) 선정절차 (농어촌 정비법 제32조)	<신설>	-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프로그램 - 전원마을 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 프로그램 -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예정지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추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신설>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 및 입지선정기준에 맞는 지역인지의 여부 - 입지선정이 완료된 지역인지의 여부 - 타법에 의하여 제약요인이 있는지의 여부 - 용지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되었는지의 여부 - 입주예정자가 적정하게 모집되었는지 여부 - 입주예정자 모집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현재 모집정도 및 앞으로의 전망 등 - 입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와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 기존마을과 인접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의 연계활용도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 - 의료, 문화, 복지 시설과의 연계활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및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의 여부	대상지선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추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토지가격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지의 여부 - 소요사업비 산출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기타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한 필요한 사항 검토	
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	<신설>	- 타부문에서 지원가능한 연계사업 추진계획 -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계획 - 타부문에서 지원가능한 연계사업 추진계획 -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운영계획 - 전원마을 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 프로그램 - 의료·문화·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 입주예정자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기본계획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함
자.전원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신설>	○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전원마을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전원마을추진의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참여와 의사결정 지원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참여확대 - 추진위원회 구성은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시·군관계자, 농업기반공사 전문가, 기존마을 주민 등을 참여시킬 수 있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원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기본조사, 실시설계, 감리, 사업시행 등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에 참여 - 입주예정자 모집 및 홍보 - 입주자가 시행하여야 할 부지정리, 마을내 공원조성, 조경, 마을가꾸기, 건축형식, 건축추진시기 협의 등 의사결정 - 입주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할측량 및 등기정리 등 공부정리비 등의 분담금 배분 및 정산 등 추진 ○ 전원마을추진위원회에서는 회의 및 의사결정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사업비 지원> 가. 예산지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지구내 체재 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용지매수비를 국고 융자로 지원할 수 있음 <신설>	<삭제> ○ 주택건축 융자금 지원은 입주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융자금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지원	'06년부터 용지매수 융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로로 삭제하고 주택건축 융자금을 규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신설>	- 융자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시장이 주택을 일괄하여 건축하여 공급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융자금을 일괄하여 대출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입주자 모집	<신설>	○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의 입주자 모집은 대상사업 선정전에 모집함을 원칙으로 함. 단, 체재형 주말농원과 은퇴농장형 전원마을중 임대할 계획으로 있는 지구는 제외 ○ 입주자모집은 도시민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도시민의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도시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일반시,도농복합형태의 시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자을 말함 ○ 입주자 모집은 사업주도자(시군주도, 민간주도)책임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민간주도형의 경우도 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입주자 모집을 인터넷게시, 공고, 향우회	입주자모집절차와 중앙단위 입주자모집 지원방안 추가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서한발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을 농어촌종합정보센터 (농업기반공사)를 이용하여 모집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종합정보센터에서는 적극 지원함 - 농어촌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원마을 위치, 조성면적, 계획호수, 토지가격 및 대금납부방법, 입주자격조건 등과 전경사진, 위치평면도 등을 농어촌종합정보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함 ○입주자 모집은 최소 기본계획수립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함 - 마을정비구역지정신청시 입주예정자 모집 결과를 첨부 ○시장·군수는 입주자 모집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입주자 모집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농업기반공사 또는 민간(입주예정자)은 입주예정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마을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주택건축 융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결과 보고시에는 성명, 성별, 연령, 전주소지, 직업, 동반가족수, 주택건축시기, 입주예정시기, 전원마을입주동기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자와 주택건축, 입주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 전원마을 주택용지가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예정자 선정시 마을기반시설 완료 후 주택건축 및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시장·군수는 민간주도형의 경우도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건축 시기, 입주시기 등 입주신청자가 실수요자인지를 사전 검토하여 실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는 마을기반시설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 후 입주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연계사업의 추진	<신설>	○ 시장·군수, 도지사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 연계사업은 새로 조성되는 전원마을 입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메뉴이어야 함 - 협의회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담당과와 연계사업 관련 실과의 장으로 구성하며, 연계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협의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연계추진 방안 신설

구 분	현 행(2005)	변경안(2006)	변경사유
		- 연계사업의 협의를 통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계산업이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 에서 조정 및 반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예산소요, 반영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해당 기관에 건의함	
라. 전원마을 입주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신설>	○ 시장·군수, 도지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하여야 함 -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은 운영프로그램 - 전원마을 주민과 기존마을 주민간의 교류 프로그램 -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연계프로그램	전원마을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프로그램 운영토록 규정

Ⅵ.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槪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500만원
- 신용보증부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3) 담보대출

○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대출가능금액
○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대지) ○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 공제증권 ○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 감정평가액의 30%이내에서 〃 ○ 감정평가액의 55%이내에서 〃 ○ 예입액의 90%이내 ○ 해지환급금의 90%이내 ○ 보증금액의 100%이내 ○ 보증금액의 100%이내 ○ 보증기금의 100%이내 ○ 보증기금의 100%이내 ○ 보증기금의 100%이내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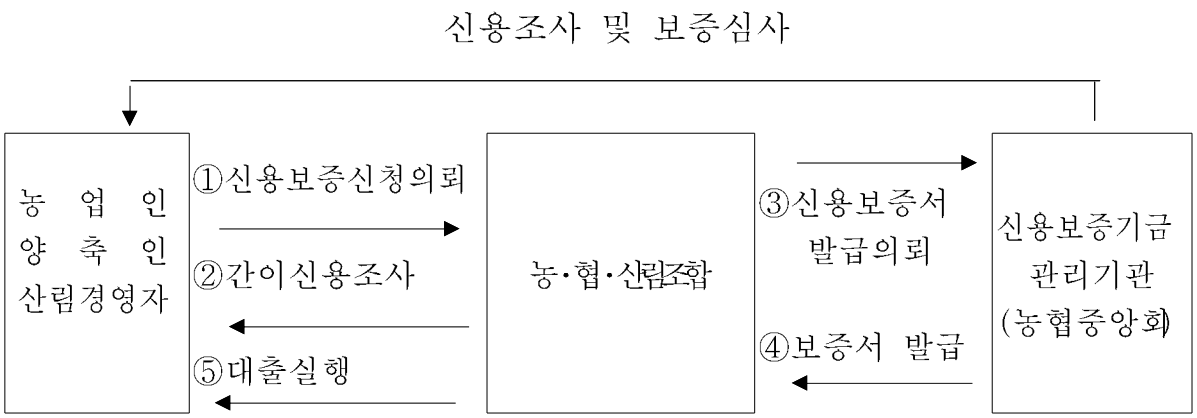

○ 보증한도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5)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담보등급	대 상 담 보 물 종 류	대 출 비 율
갑 류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71 ~ 80%
을 류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등창고류	○ 투자금액의51 ~ 70%
병 류	○ 유리온실, 철골Pet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41 ~ 5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 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정관 또는 규약					○	○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 법인인감증명서					○	○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	△	△	○	○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 사업계획서	△	△	△	△	○	○	
	○ 월별공정계획표	○	○	○	○	○	○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		○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		○	
	○ 건축물대장		○		○		○	
	○ 토지대장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지적도		○		○		○	
	○ 개별지가확인원		○		○		○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		○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1)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2) 4시간 초과 : 100,0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면제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원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3 % - 0.6 %
- 법인 : 연율 0.5 % - 1.0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